

사 회 문 화 분 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2001

통 일 부

목 차

제1장 남북교류협력 추진경위	1
1. 추진경과	3
2.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약사	4
제2장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 절차	17
1. 남북한 주민접촉	19
가. 접촉의 개념	19
나. 북한주민접촉 신청	20
다. 접촉 안내교육	22
리. 접촉 결과보고	22
마. 승인유효기간 및 재신청	23
바. 사후 신고	23
2. 남북한 왕래	25
가. 남북한 왕래의 개념	25
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26
다. 북한방문 안내교육	29
리. 출입심사	30
마. 방북결과 통보	32
바. 남한방문 절차	32

- 3.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33
 - 가. 재외국민의 범위 33
 - 나.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절차 34
- 4.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34
 - 가. 협력사업의 개념 34
 - 나. 협력사업 추진절차 35
- 5.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41
 - 가. 남북협력기금 설치목적 41
 - 나. 주민왕래 지원 41
 - 다.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 지원 42
 - 리. 남북협력기금 처리절차 43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준비와 추진 45

- 1. 기획단계 47
 - 가. 교류사안의 선정 47
 - 나. 교류상대방 선정 49
 - 다. 중개자 선정 50
 - 리. 북한의 대남사업기구 50
- 2. 교류단계 52
 - 가. 실무접촉 52
 - 나. 제3국에서의 교류 53
 - 다. 남북한 왕래교류 55

3. 북한주민 접촉·교류시 유의사항 57

제4장 남북한 교류협력 실태와 현황 61

1. 교육학술분야 63
가. 추진실태 63
나. 교류방향 73
다. 북한 과학기술기관·인명 현황 74

2. 문화예술분야 79
가. 추진실태 79
나. 교류방향 90
다. 북한 문화예술기관·인명·시설 현황 92

3. 종교분야 97
가. 추진실태 97
나. 교류방향 107
다. 북한 종교단체 현황 108

4. 체육분야 109
가. 추진실태 109
나. 교류방향 119
다. 북한 체육기관·인명·시설현황 120

5. 언론·방송·출판분야 125
가. 추진실태 125
나. 교류방향 130

다. 북한 언론·출판계 현황	131
6. 관광분야	136
가. 추진실태	136
나.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	137
다. 북한의 관광정책	140
라. 북한의 관광상품	141
7.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자) 승인단체 현황	148

부 록

<input type="checkbox"/>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 관련 양식	153
<input type="checkbox"/> 남북협력사업 관련 양식	161
<input type="checkbox"/>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171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73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182
●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202
● 금강산관광객등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	207
●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209
● 남북협력기금법	211
●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216
<input type="checkbox"/> 남북교류협력 관련 남북간 합의 문건	223

제 1 장

남북교류협력 추진경위

1. 추진경과

2.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약사

1. 추진경과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이 성사된 이래 단절되어 오다가 1980년대 들어 남북 당국차원에서 조심스럽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집족, LA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 로잔느체육회담, 국회회담 예비집족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1984년 수재물자 인도·인수와 1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상호교환 등 2건으로 남북 당국 차원의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한 것은 모든 부문에 걸쳐 남북교류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방향이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에서 제시된 이후부터이다. 「7·7특별선언」을 계기로 정부는 개방과 화해정책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천명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7·7특별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을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의 법제화에 착수하여 1990년 8월 1일 마침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비로소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으며, 이 법의 절차를 밟을 경우 누구라도 남북교류협력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1991년에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1992년 교류협력분야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은 「남북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가 채택되면서 남북한간의 화해·협력의 시대가 개막되게 되었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적극적 추진을 「대북정책 3대원칙」의 하나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1998년 4월 30일 발표한 「남북경협활성화조치」 이후 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이 개시되는 등 문화예술·종교·언론을 비롯한 사회문화분야의 방북 및 협력사업은 지난 수년간의 실적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역사

1970년대

- '71. 7. 4 남북공동성명
- '71. 8. 29~9. 2 남북직접자회담(평양), 남북조절위원회
- '71. 2. 27 남북한 탁구단일팀 구성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탁구회의

1980년대

- '84. 4. 9 제1차 남북체육회담
- '84. 9. 29~10. 4 판문점, 인천항, 북평항에서 북적 수재물자 인도·인수

- '84. 11. 15 -쌀 5만석, 천 50만m, 시멘트 10만톤, 의약품 14종 등
남북경제회담
- '85. 9. 20~23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서울·평양
동시교환 방문
-상봉가족 : 65가족 92명
- '86. 9. 20 제1차 글리온 회의(스위스, 글리온)
- '88. 7. 7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특별선언 발표
- '88. 10. 4 7·7 특별선언 경제분야 후속조치 발표
-대북교역 허용 등 대북경제 개방조치
- '89. 3. 31 통일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
- '89. 6. 12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제정
- '89. 7. 29~8. 12 기본지침 제정이후 최초 민간차원의 방북
-재일대한기독교회 이대경 목사

1990년도

- 7. 10~13 제1차 기독교자 동경회의(일본, 도쿄)
- 8.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정
- 8. 4 최초 방북 불허 조치
-신창균 범민련 부의장 등 12명, 범민족대회(8. 6)
- 9. 4~7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서울)
-북한 연형묵 총리 등 90명 남한 방문
- 10. 9~13 남북통일축구대회(평양, 5.1 경기장) *2:1 북측 승리

- 정동성 체육부장관 등 76명 체육분야 최초 방북
- 10. 10~14 뉴욕남북영화제 개최(미국 뉴욕)
- 10. 14~24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평양)
- 10. 21~25 남북통일축구대회(서울, 잠실주경기장) *1:0남측승리
- 11. 9 정부, 남북교류협력에관한시행규칙(총리령)공포
- 11. 14 북한 「문예총」 대변인, 남한 「예총」의 문화예술 교류 창구 단일화 제의 거부 성명
- 12. 8~13 '평양민족음악단', '90송년통일전통음악회 참가(서울)

1991년도

- 2. 12 제4차 남북체육회담,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합의
- 3. 16 최초의 남북협력사업 승인 및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일본)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
- 3. 25~5. 9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일본)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여자 단체전 우승)
- 5. 1~5 환동해국제예술제(일본, 쓰루가)
- 5. 6~6. 28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포르투갈) 남북 단일팀 구성. 참가(*8강 진출)
- 5. 27~29 남북코리아서화전(중국, 북경)

- 7. 9~12 제 2차 기독교 동경회의
- 9. 17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 10. 28~11. 4 남북한 불교대표자 연석회의
-LA관음사, 남북 불교인 최초 접촉 성사
- 11. 25~29 아세아의 평화와 이성의 역할 서울 개최
-북한 여성계 인사의 최초 남한 방문
- 12. 10~13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서울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

1992년도

- 5. 5~8 남북연락사무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
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공동
위원회 구성 합의
- 5. 18 「군사」, 「경제 교류·협력」, 「사회문화 교류·
협력」 공동위 구성 및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
개시
- 6. 16~17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남
북회의(파리) *한글로마자 표기안 합의
- 7. 19~25 북한 김달현 부총리 최각규 부총리의 초청으로 서울
방문
-대우자동차, 포항제철 등 산업시찰
-대통령 면담(7. 24)
- 8. 17~18 「통일예술축제」 남북합동공연(러시아, 사할린)

9. 1~6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토론회(평양)
-이우정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등 30명, 여성계 인사 최초 방북
10. 20~22 제3차 기독교 동경회의

1993년도

3. 19 이인모 노인, 판문점 통해 방북
4. 14~21 대학생 대표 최초 북한주민접촉 승인
-박형규 목사, 조두현 서울대학총학생회장 등 6명, 미 버클리대 주최 제2차 한반도 통일문제 심포지움 참가
10. 24~25 동아시아 경기대회 협의회 제7차회의 (평양)
-이강평 KOC 명예총재 등 체육계 인사 등 6명 방북
11. 7~8 일본의 전후 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평양)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인사 2명 방북
11. 8~10 두만강지역개발대회 제2차 산업·자원·환경분야 전문가 회의 (서울)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3명 참가
11. 11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발족
-정계,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인사 170여명으로 구성

1994년도

5. 31~6. 2 제4차 기독교 동경회의
6. 28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체결
9. 26~30 남북최초의 사진교류(중국, 연길)
-이명복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등 5명, 「뉴코
리아나 국제사진전」 개최
11. 8 「남북경협환성화조치」 발표
11. 24 남북경협 후속조치 발표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국내기업과
경제단체의 북한지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남
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
시 개정 등 3개 지침을 확정 발표

1995년도

3. 28~31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4차 기독교 국제협
의회(일본, 교토)
-남북기독교인, 광복절 판문점 공동예배 합의
6. 24 남북한 대북쌀제공 계약서 합의(북경)
-대한무역진흥공사, 조선삼천리총회사
6. 26~29 미주평화통일 화년대회(미국, 로스앤젤레스)
7. 6 기술자 방북 승인
-(주) 대우 이재목 과장 등 5명

- 7. 19~24 광복50주년 기념 미주대회(미국, 신시내티)
- 8. 22~28 소망교회 광선회 목사 방북
- 10. 27~11.2 남북해외 천주교인 뉴욕세미나(미국, 뉴저지)

1996년도

- 1. 29~2. 2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국제 에큐메니칼 회의회(마카오)
- 2. 26~29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 회의(북경)
- 4. 29 (주) 대우, 북한남포공단에 첫 합영공장 설립 발표
- 5. 13 LG그룹, 대북임가공 컬러 TV 첫 반입
- 6. 5~7 제5차기독자 동경회의
- 8. 5~7 한국어 언어학자 한, 북, 중 국제학술대회 개최(장춘)
- 8. 29 대우, 북한 남포공단에 직원 첫 상주

1997년도

- 2. 5 개신교 주요 교단, 북한동포후원연합회 결성
- 5. 6 대한불교조계종, 조선불교도연맹측과 부처님 오신 날 불교도 공동발원문 합의
- 6. 27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치리에관한규정」 제정
- 10. 7~10 남북한 비행정보구역(FIR)통과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남북한 당사자 회의 개최(태국, 방콕)

-대구-평양 항공교통 관제소간 관제통신망 구성·운영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12. 10 「통일문화연구소」 북한문화유적답사·조사 협력사업 승인

1998년도

2. 25 김대중 대통령 취임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의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대북3원칙제시(무력도발 분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 추진)
4. 28~5. 5 정범진 성균관대 총장 방북
-북한 고려성균관과 학술교류 협의
5. 2~12 리틀엔젤스예술단 평양공연(3회) 방북
-한국문화재단 박보희 이사장 등 66명
6. 5 나진과기대 설립추진 협력사업 승인
6. 16~23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금강산 관광교류사업 협의 방북(판문점 경유)
6. 22 현대-북한 아시아대평양평화위원회간 「금강산관광을 위한 계약서」 체결
8. 11 문규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 등 9명 방북
-북한 주도의 8. 15 통일대축전 참가 등으로 물의 야기

- 9. 1 북한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SBS에서 처음 방영
- 9. 7 현대3사(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반)에 금강산관광사업 추진 협력사업 승인
- 9. 9~11 북한영화 「위끼징」 (5부작), KBS에서 방영
- 9. 13~10. 24 김진경 연변과학기술대 총장, 평양 치과병원 설립 협의차 방북중 북한체제 진북 협의로 억류
- 9. 26~10. 2 박재규 경남대 총장 방북, 북한 김책공대와 학술 교류 협의
- 10. 2 「금강산관광선의 안전운항및해난구조위원회」 구성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 8개부처
- 10. 20~27 김병관 동아일보 회장 방북, 언론교류 협의 및 문화 유적답사, 취재 협의
- 10. 29 현대-북한 아태평화위 「금강산관광사업에관한합의서」 등 체결
- 10. 31~11. 7 윤이상 통일음악회, 평양 개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최하례 사무총장 등 14명 방북
- 11. 10~17 권근술 한겨레신문사 사장, 인도직 대북지원 및 언론교류 협의 방북
- 11. 12 현대전자사업, 한국통신, 온세통신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승인
- 11. 14 「금강산관광에따른환전지침」 제정(재정경제부 고시)
- 11. 16 「금강산관광객의북한방문절차에관한특례」 고시 제정

- 11. 17 금강산관광지원 통신망 개설(6회선)
- 한국~일본IDC~인텔센~평양~원산~온정~장전
- 11. 18 현대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

1999년도

- 1. 4 김대중 대통령 안보관련 3대방침 발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 남북화해협력 지속
추진,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지지 강화
- 1. 15 현대3사에 협력사업 변경 승인
-금강산관광사업→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 관광
개발사업비 2,500만불 최초 송금
- 2. 28 금강산 공인장, 휴게시설 완공
- 6. 20 금강산 관광객 1명, 북한측에 억류
- 6. 21~8. 4 금강산관광 중단
- 6. 25 억류 금강산 관광객 귀환
- 7. 30 현대-북한 아태위, 금강산 「관광세칙」 및 신변
안전보장 관련 「합의서」 채택
- 8. 10~14 통일업원남북노동자 축구대회 개최(평양)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등 37명 방북
- 9. 27~10. 1 남북통일농구대회 개최(평양)
-현대 남녀 농구단 등 79명 방북
- 10. 23 외국인 16명, 금강산 시범관광 시작

- 10. 30~11. 4 라진로템제약회사 협력사업 협의 방북('98. 9 이후 나진선봉지역 첫 번째 방북)
-김형석 한민족복지재단 사무총장 등 3명
- 10. 26~27 제5차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북경)
- 11. 9~16 김정배 고려대 총장, 단군문제 관련 학술교류 회의 방북
- 11. 15~19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 9명, 2002년 월드컵 북한참여문제 등 협의차 방북
- 11. 20 금강산 온천장 개장

2000년도

- 3. 9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발표
- 3. 9 금강선 유람선(풍악호), 부산 다대포항 첫 출항
- 4. 10 남북정상회담 개최 공동 발표(서울, 평양)
- 5. 24~30 북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 공연
- 5. 29~6. 11 북한 평양교예단 서울 공연
- 6. 13~15 남북정상회담(평양)
-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 7. 28 통일탁구대회 개최(평양)
- 7. 29~3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 8. 5~12 언론사 사장단 방북
- 8. 14 남북 연락사무소 업무 재개('96.11 이후 업무 중단)
- 8. 15~18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방문(서울, 평양)
- 8. 18~24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 서울 공연

- 8. 29~9. 1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 9. 2 비전향장기수 63명 송환(판문점)
- 9. 11~14 북한 김용순 특사 방한
- 9. 15 남북선수단, 시드니 올림픽 개최식 공동입장
- 9. 18 경의선 철도·도로 복원사업 기공식(임진각)
- 9. 22~27 조총련 동포(50명) 1차 남측 고향방문
- 9. 22~28 백두산 관광단(109명) 방북
- 9. 25~26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제주도)
- 9. 27~30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제주도)
- 10. 1 제81회 부산진국체육대회 관련 성화채화(금강산 옥류동 무대바위)
- 10. 2~5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한 남북 신문교환 실시
- 10. 9~14 우리측 방문단(42명), 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 참관
- 11. 11~19 영화인 등 10명 방북
- 11. 17~22 조총련 동포(119명), 2차 남측 고향방문
- 11. 30~12. 2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방문(서울, 평양)
- 12. 11~14 민주노총, 남북노동자 통일토론회 개최(금강산)
- 12. 12~16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 12. 15~17 금강산 가극단 공연(서울)
- 12. 19~20 남북한 및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관련 국제학술 회의(연길)

2001년도

- 2. 1~2 춘향전 방북 공연(평양)
- 2. 22~24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 개최(연길)

- 2. 26~28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방문(서울, 평양)
- 3. 1~6 일제의 조선강점 불법성에 대한 남북공동 자료 전시회 개최(평양)
- 3. 10~14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방북
- 3. 24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북측 조문단 4명 서울 방문(서해 직항로)
- 3. 28 조총련계 양규사 선수, 국내프로축구단 입단
- 4. 6~11 조총련 동포(80명), 3차 남측 고향방문
- 4. 30~5. 2 노동절 남북공동행사 개최(금강산)
- 6. 2~5 민족옷 전시회 개최(평양)
- 6. 5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관련 협력사업 (자)승인
- 6. 8 현대-아태간 관광대가 조정, 육로관광, 관광특구 지정 관련 합의서 체결
- 6. 14~16 6.15 민족대토론회 개최(금강산)
- 6. 14~24 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평양)
- 6. 19~22 김운용 대한체육회장 방북(평양)
- 6. 20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현대-한국관광공사 컨소시엄 구성 합의·발표
- 7. 17~19 남북농민통일대회 개최(금강산)
- 7. 21 금강산 현지 투자설명회 개최
- 7. 31 통일염원 6.15 금강산앨리대회 개최(금강산)
- 8. 15 국제 금강산 모터사이클 투어링 개최(금강산)
- 8. 14~23 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서울)
- 8. 15~21 2001민족통일대축전 참가(평양)

제 2 장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 절차

1. 남북한 주민 접촉
2. 남북한 왕래
3.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4.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5.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1. 남북한 주민 접촉

가. 접촉의 개념

【접촉】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거나 중개인(제3자)을 통하거나 전화, 우편, FAX, TELEX,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접촉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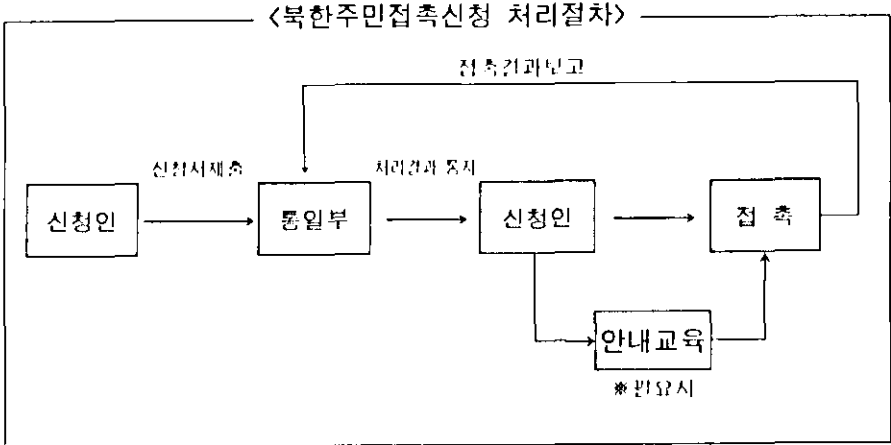
【남·북한주민】

남한주민은 남한에 적을 둔 주민(법인·단체 포함)을 의미하며, 북한주민은 북한에 적을 둔 주민(법인·단체 포함)과 조총련 등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주민접촉승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남한 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북한주민집족 신청



【신청시기】

집족목적이 구체화되고 집족대상과 중개인이 선정되면 통일부장관에게 최소한 집족예정인 15일전까지 북한주민집족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방법】

직접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유학생, 상사주재원, 해외파견 근무자 등 외국에 나가있는 남한주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류】

- 북한주민집족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신청서류 작성】

<북한주민집족신청서>와 <신원진술서>는 소정양식으로 통일부 해당과에서 배포하고 있다. <북한주민집족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피집족예정인 인적사항, 집족목적 등을 기재하며, <신원진술서>는 신청인의 신원사항을 작성항목에 따라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고, 우측 상단에 신청인 사진을 부착한다. 1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집족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만 집족신청서를 기재하고 신원진술서는 개별 작성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신청사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집족세부계획서(또는 사업계획서), 신청단체 소개서, 교류내용이나 집족목적을 설명하는 참고자료 등을 말한다.

집족세부계획서는 <북한주민집족신청서>에 기재한 집족목적·집족경위·집족일정 및 장소 등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며, 신청단체소개서는 교류 추진주체(사회단체 또는 기업)의 남북교류수행능력을 가늠해 보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조직의 연혁·현황, 정관, 주요활동 내용 등을 포함한다. 행사개요서, 관련 프로그램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고, 특히 대학생인 경우에는 지도교수 추천서와 총(학)장 확인서를 첨부한다.

【처리결과】

북한주민집족 승인시에는 집족인, 피집족인, 집족목적, 승인유효기간, 유의사항 등을 문서로 통보하며, 불허시에는 불허사실 및 사유를 통보한다. 북한주민집족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5일이다.

다. 접촉 안내교육

【교육대상】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접촉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접촉예정자에게 안내교육을 받을 것을 승인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안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접촉예정자가 자발적으로 안내교육을 받고자 희망할 경우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장소】

통일교육원 등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행한다.

【교육내용】

접촉예정자에게 북한주민접촉과 관련된 지식과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제공하며, 남북관계현황·북한실상·북한주민접촉시 행동요령, 기타 접촉목적과 관련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다.

라. 접촉 결과보고

【관련근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5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접촉 등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접촉 결과작성】

접촉 결과보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접촉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마. 승인유효기간 및 재신청

【승인 유효기간】

북한주민집족의 승인기간은 최장 3년의 범위내에서 사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하며, 승인유효기간중에는 승인받은 집족목적 범위 내에서 횡수에 관계없이 집족이 가능하다.

【재신청】

북한측과 협의진행중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속집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이전에 재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승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최초 신청때와 동일하다. 다만 신청서류중 <신원진술서>와 같이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서류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그간의 북한주민과 집족한 내용 등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자료를 추가해야 한다.

【집족목적 변경】

승인유효기간내의 집족이라 할지라도 승인받은 집족목적 범위를 벗어난 집족을 한 경우나 집족신청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사후 신고

【사후 신고대상】

북한주민과 집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 신고로 갈음한다.

-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경우
-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사후신고 방법】

접촉후 7일 이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소장양식)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 제출한다.

2. 남북한 왕래

가. 남북한 왕래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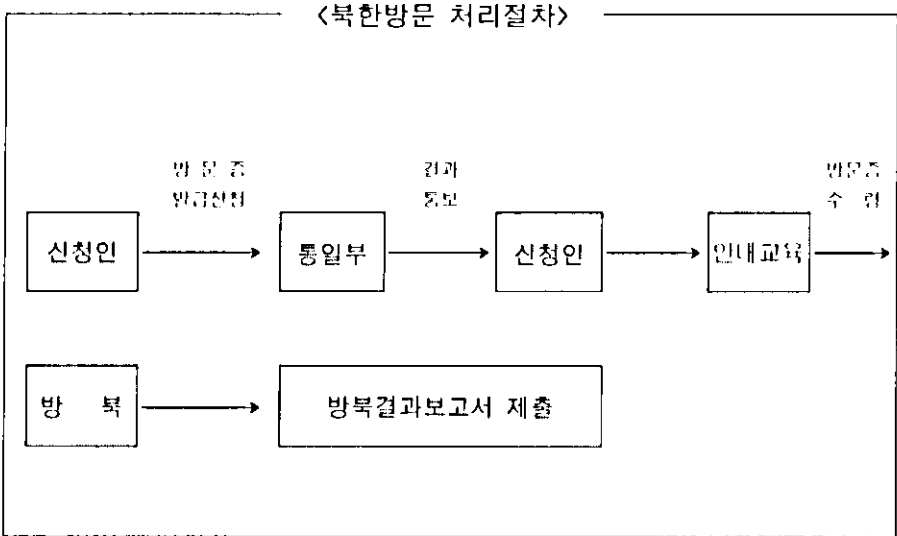
【남북한 왕래】

남한주민이 북한지역(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하며,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왕래승인】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각각 북한과 남한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신청시기】

북한측과의 접촉을 통해 북한지역을 방문키로 합의하고,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입수한 경우 방북예정일 20일전까지 신청한다.

【신청방법】

직접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유학생, 상사주재원, 해외파견근무자 등 외국에 나가있는 남한주민은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리인 신청서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단모 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 4매
-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 기타 동인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신청서류 작성】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신원진술서>는 소정양식으로 통일부에서 배포한다.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방문대상자 인적사항, 방문목적, 일시·방법 및 귀환예정 경로 등을 기재하며, 우측상단에 신청인 사진을 부착한다. <신원진술서>는 신청인의 신원사항을 작성항목에 따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우측상단에 신청인의 사진을 부착한다.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는 군미필자(허가서)의 경우 해당지역 병무청에서, 군필자(신고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는 북한기관이 발행하는 초청장 등 신변안전보장 관련 문서를 의미하며 초청장은 일반적으로 초청목적, 초청기관, 피

초청인,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 보장, 초청인(기관)의 서명·날인, 발급일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는 신청사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방북활동계획서, 신청단체 소개서 등 방북경위와 방북목적 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 등이다.

【처리결과】

북한방문이 승인된 경우는 <북한방문증명서>가 발급된다. <북한방문증명서>에는 증명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방문목적, 방문기간, 신장, 방문증 발급일자 등이 기재되며 방문자 사진을 부착한다. 북한방문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허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20일이다.

【방문기간 부여】

방문기간은 기본적으로 방문목적과 북한측의 초청기간을 고려하여 적정기간을 부여한다. 최장 1년 6월까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처음 승인된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방문기간 연장은 소정의 <방문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또한 최초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시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히가서>를 제출한 신청자는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 히가서>를 함께 제출한다.

【수시방북증명서 발급】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왕래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방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최장 3년의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 횡수의 제한없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재발급】

방문기간 만료 후 계속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북한방문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최초 신청때와 같다.

<북한방문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기타 방문증명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북한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재발급 신청서류로는 소정양식인 <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서>와 <방문증명서용 사진 2매> 및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등이 필요하다.

다. 북한방문 안내교육

【목 적】

북한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에게 북한방문과 관련된 지식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방북활동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기와 장소】

시기는 방북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 후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통보하며,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한다. 안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한다.

【안내교육내용】

북한방문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과 유의사항이며, 남북관계현황, 북한실상, 북한방문시 행동요령, 기타 방북목적과 관련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교육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보통 4~8시간이다.

라. 출입심사

【출입장소】

남한의 출입장소에서 직접 북한을 왕래할 때는 출입장소에서 소정의 출입심사가 이루어진다. 출입장소는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공항·기타 장소(판문점 등)를 말한다.

【심사절차】

방북자는 출입심사 공무원에게 <출입신고서>와 <왕래주민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심사에서는 신원확인, 휴대물품 등의 검사, 검역, <북한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등이 이루어진다.

휴대물품은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통일부고시)에 따라 반입·반출이 불허되는 물품과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허용되는 물품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북한 왕래시 유의해야 한다.

휴대 반출 및 반입 금지 품목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는 다음의 품목의 물품을 휴대품으로 남한지역에 반입하거나 북한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통인부 고시 제99-1호).

[반입금지품]

- ①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 간행물, 영화, 음반, 조각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② 화폐, 수표, 어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 ③ 총포, 도검 및 화약류 등
- ④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 ⑤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반출금지품]

- ① 반입 금지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 ② 군사상 기밀 및 남한 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③ 군수문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④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사전 허가필요하는 물품]

- ①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 ② 검역대상 물품
- ③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에 의한 수출규제 품목
- ④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마. 방북결과 통보

【북한방문증명서 반납】

<북한방문증명서>는 방문을 마치고 귀환할 때 반납한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귀환할 경우는 출입장소(판문점 등)에서 반납하고 제3국을 통해 귀환할 경우에는 귀환후 즉시 통일부에 반납한다. (*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반납할 수 있음)

【북한방문결과 통보】

북한방문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북한방문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북한방문 결과 보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가급적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귀환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방문자 인적사항, 방문기간, 방문목적, 주요 접촉인사, 방문일정변 방문지역 및 활동내용, 북한측 반응, 향후 추진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바. 남한방문 절차

남한방문절차는 원칙적으로 남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북한주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나 현실적으로는 북한주민을 초청하는 남한초청자가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제반절차를 밟게 된다. 신청서류 외에는 기본적으로 북한방문절차와 동일하다.

【신청서류】

-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1부
-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 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 4매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남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법령에 의한 소정양식으로 남한 초청자가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작성한다.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는 북한주민 초청과 관련된 행사개회서, 초청경위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 등이다. 나머지 서류는 대리신청시 대리신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3.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가. 재외국민의 범위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허가를 얻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를 말한다.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해도 유학생·교환교수 등과 같은 단기체류

자는 여기서 말하는 재외국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특별 영주자, 영주자, 정주자들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재외 국민으로서 사진신고만으로 북한방문이 가능하다.

나.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절차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재외 공관에 <북한방문신고서>,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 사전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북한을 방문한 경우에는 귀환후 10일이내에 <북한방문 경과보고서>,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4.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가. 협력사업의 개념

민족의 동진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당사자간의 합의 및 계약에 따라 계획·준비·실시 및 사후처리 등이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교육·학술, 문화·예술, 종교, 보건, 과학, 체육, 출판·보도 등의 분야에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비영리적 활동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

그동안 협력사업은 1991년도 일본 지바현에서 개최된 「세계탁구 선수권대회」와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이 참가한 경우 2건으로 다소 미미한 실정이었으나 1997년 부터 협력사업자 승인이 27건, 그중 협력사업 승인이 20건에 이르는 등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본격적인 남북 「화해·협력」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협력사업의 유형】

- 공동 조사·연구·지작·편찬과 그 보급
- 영화·인극·음악·무용·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 제작·상영 및 공연
- 음반 및 영상물·방송프로그램의 공동 제작
-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 개최
- 학술·문화 연구단체,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공동 추진
- 기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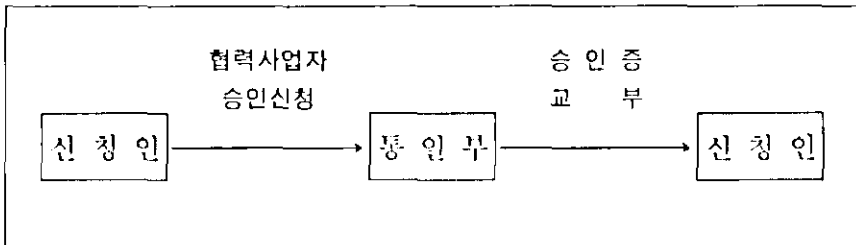
나. 협력사업 추진절차

협력사업은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협력사업자 승인절차

【협력사업자 승인신청】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방북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북한측 상대방과 논의가 구체화되고 이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력사업자> 승인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개인(단체)의 자격과 능력, 사업의 타당성 등을 확인한다.



<협력사업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추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해당분야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최근 3년이내에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서류】

-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 1부(소정양식)
- 협력사업 개요설명서 1부
- 북한측 당사자와의 의향서 사본 1부
- 국내 혹은 국외에서 최근 3년이내의 해당분야 사업실적 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협력사업 개요설명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당해 협력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서로 특별한 양식없이 신청인이 자유롭게 작성하며 사업내용, 목적, 추진경위, 사업추진방식, 사업상대방, 소요경비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개략적 내용을 기술한다.

<의향서>는 사업추진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서로서, 북한측 상대방의 당해 협력사업 추진의사를 증빙하는 서류를 말한다. 명칭은 합의서, 협의서, 계약서 등으로 표기되며 사업내용, 규모, 사업장소, 당사자, 추진방식, 추진일정, 경비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국내 혹은 국외에서 최근 3년이내의 사업실적>은 협력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경험·전문성 등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승인요건】

- 협력사업추진이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
- 사업추진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
- 사업추진 당사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것
- 이미 추진되고 있는 동종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영리목적 추구 및 과도한 대가지분이 없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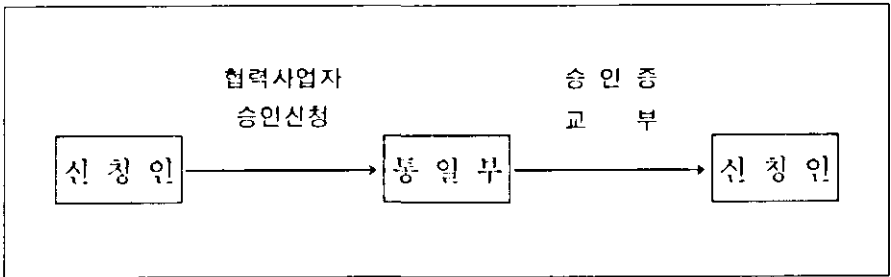
【처리기한】

<협력사업자> 승인은 원칙적으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내에서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되며, 승인시에는 「협력사업자 승인증」이 교부된다.

협력사업 승인절차

【협력사업승인 신청】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후 북한측 당사자와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기친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협력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력사업> 승인은 당해 협력사업의 실현가능성,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의 부합여부, 타 협력사업과의 경합 및 남북한간의 분쟁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신청서류】

- 협력사업 승인신청서 1부(소정양식)
- 사업계획서 1부
-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1부
- 협력사업 상대자외의 협의서 1부
- 북한당국의 확인서 1부
-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타당성 조사결과 1부
- 단독투자외의 경우 북한당국에 제출할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사업계획서>에는 추진경위, 주요내용, 추진일정계획, 소요경비 및 경비조달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다. <협력사업 상대사에 대한 소개서>에는 북한측 당사자의 인적사항, 경력(기구인 경우 인허), 활동실적 등을 기술한다.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에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북한측의 책임있는 상대자와 최종 합의한 것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협력사업의 명칭
-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조직 또는 기구등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직 (기구)명, 소재지, 임원의 구성 등
- 사업의 목적, 기간, 방법,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당사자간 자금분담금
- 분쟁해결, 효력방생 및 소멸, 불가항력의 사유
- 공동제작의 경우 저작권의 행사, 양도, 내어, 소멸 및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과 「협력사업 관련자의 신변보장 및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승인요건】

-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 추진코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실현가능한 것

-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 사업관계자가 협력사업을 추진할만한 능력을 갖출 것(기술, 자금, 조직 등)

【처리기한】

협력사업 승인처리 기간은 협력사업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내에서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협력사업의보고】

협력사업자는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사업의 착수, 사업 진행상황(분기별), 사업의 만료 또는 약정이나 계약의 해지·해제, 분쟁 및 사고의 발생, 협력사업자(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처리】

협력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자 승인 및 협력사업 승인의 신청과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 남북한 당국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기타 통일부장관이 동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가. 남북협력기금 설치목적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간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지원·촉진시킴으로써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설치 운용되고 있다. 지원유형은 남북한간 주민왕래 자금지원,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 자금지원, 기타 민족공동체 회복사업에 대한 지원 등이다.

나. 주민왕래 지원

【지원대상】

남북한을 왕래하고자 하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단체 포함)이다.

- 자비에 의해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 개인별 부담이 적절치 않은 경우
-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키로 한 경우
-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한도】

지원한도는 숙식비, 교통비 등 기본적 경비 범위내로 하되,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신청서류】

- 주민왕래 지원자금 신청서 2부
- 방문자 명단(4인이상인 경우)
- 방문계획서 1부
- 기금사용계획서 1부
- 방문자의 주민왕래 지원자금 신청위임장(대리인인 경우)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별도요청시)

다.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사업시행의 승인을 받은 자(단체 포함)이다.

지원한도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 처리에 소요되는 금액 범위 이내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수익금을 제외한 범위이내이다.

【신청서류】

- 문화·학술·체육협력 지원자금 신청서 2부
- 사업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승인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1부
- 사업상대자와의 협의서 사본 1부
- 기금사용계획서 1부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별도요청시)

제 3 장

남북교류협력의 준비와 추진

1. 기획단계
2. 교류단계
3. 북한주민 접촉·교류시 유의사항

1. 기획단계

가. 교류사안의 선정

무엇을 교류할 것인가 하는 교류사안의 선정은 남북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이다. 교류사안의 선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기도 어려운 뿐 아니라 북한의 호응을 기대할 수도 없다.

모든 교류가 반드시 남북통일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교류, 추진주체의 능력을 벗어난 교류, 즉 흥족·감상적·과당 경쟁적인 교류, 개인의 공명심을 앞세운 교류 등은 비용과 시간만을 낭비할 뿐 남북관계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교류사안은 어떤 것인가? 사회문화분야 자체가 방대하고 또 각 분야마다 교류가능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적시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남북교류는 남북상호간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고 남북공동체의 회복·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다음 몇가지 선정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안

남북교류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가 해당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함께 조직·인원·재정 등에서 이를 감당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안을 선택해야 하며 해당분야 구성원들간의 합의를 모아 대표성을 띠고 추진하여야 한다.

(2) 가급적 쉽고 작은 사안부터 추진

예컨대 관련자료의 교환, 제3국에서의 교류, 남북한 왕래 등의 순으로 교류의 폭과 깊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처음부터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고, 기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교류사업의 추진은 남북교류협력의 초기단계에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할 수 있겠다. 특히 흥행성을 노린다거나 진시용 교류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간 수준차가 큰 분야에서의 교류도 이를 실현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3) 민간차원의 성격에 맞는 사안

예를들면 남북한 통일맞춤법 제정 등과 같이 남북한 당국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 등은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4) 정치·이념성이 배재된 사안

남북민간교류는 교류취지가 순수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체제선진에 이용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은 적합하지 않다. 특히 문화예술분야 교류협력을 준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헌정 기본질서와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을 미치는 사안, 공공부리·공공질서를 해치는 사안,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 화해를 저해하는 사안 등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목적”의 교류협력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기본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이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그 동안 실제 이루어진 교류사례, 관계전문가들이 발표한 학술·문화·종교분야의 남북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자료, 경험자의 조언 등을 참고하면 교류사안을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 교류상대방 선정

교류사안이 결정되면 그 다음으로 할 일은 교류상대방을 찾는 일이다. 교류상대방은 당연히 추진하고자 하는 교류사안에 부합되는 북한의 관계자 또는 단체가 된다. 교류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교류의 질은 물론 교류의 성과까지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교류상대방을 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처럼 직능단체가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조직되어 있는 단체들조차도 인물·활동 등 구체적인 현황이 소상히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적합한 교류상대방을 모색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설혹 적합한 인물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들을 교류의 장으로까지 이끌어 내는다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교류상대방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북한자료센터」(광화문 우체국 6층)를 방문하여 북한자료를 찾아보는 방법, 중국·일본 등의 유관단체에게 자문하는 방법, 과거에 개최된 유사한 남북교류사례를 참고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중개자 선정

교류사안과 교류상대방이 결정되면 교류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류제외와 협의는 남북한 교류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나 이는 남북한 현실 여건상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교류제외와 협의는 부득이 중개자가 협의함에 따라 교류의 성사여부도 중개자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중개자는 우리측의 의사를 북한 교류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평소 우리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사나 단체중에서 신뢰할만하고 북한과 수시 연락이 가능한 유력인사나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교류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포단체나 유력인사, 제3국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을 중개자로 활용하고 있다.

라. 북한의 대남사업기구

북한의 대남사업체계를 보면 노동당 비서국에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대남사업담당비서를 두고 그 휘하에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구 사회문화부), 35호실(구 대외정보조사부), 자진부 등을 두고 있다. 아울러 통일전선부 산하 외곽단체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한국민족민주전선(민민전),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등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계, 사회문화계, 종교계 등 각 단체인사들로 구성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를 설립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대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조평통은 1961년 5월 13일 결성된 노동당의 외곽단체로 당의 노선 관철과 정책수행 및 통일진선전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인사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통일진선 형성, 남한내 국론 분열 및 친북여론 조성을 위한 선전공세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회담시 조평통 간부들이 회담대표로 참석하는 등 남북회담 업무 전반을 주관하고 있다. 조직편성을 보면 중앙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참사실, 서기국이 있고 서기국 산하에 조직부, 선전부, 회담부, 조사연구부, 총무부 및 자료종합실 등이 있다.

□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아·태평화위는 아·태 지역 미수교 국가들과 정치·경제·문화교류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1991년 5월 통일진선부 산하에 설립된 노동당의 외곽단체이다. 조직체계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이 있으며 그 밑에 정치, 경제, 문화, 생태, 관광, 종교 등 부문별 부서들과 연구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구는 미국·일본 등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창구역할과 함께, 유력 외국인사에 대한 방북 초청 및 해외학술회의 참가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는 남북간의 각종 민간교류와 경험업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민화협은 1998년 6월 8일 북한이 8·15 대축전 제의(6.10)에 앞서 북한의 정계, 사회·문화계, 종교계 등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 방침’(98. 4)에서 언급된 “은 민족의 집족·대화과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화협의 조직구성은 회장과 부의장,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이외에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과거 북한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산하기구로 중국지역에서 북한의 대남 경협 문제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으며 '98년 5월말 구 「광명성경제연합회」에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개칭되었다.

평양에 본사를 두고 회장, 부회장, 서기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광명성총회사, 삼천리총회사, 개선무역회사,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고려상업은행 등을 두고 있다.

중국지역에 북경대표부 및 단둥대표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인들과 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 교류단계

가. 실무접촉

실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남북한 교류추진 관계자들간에 실무접촉을 갖기도 한다. 실무접촉은 남북한 사이에 남북교류행사 개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구체적으로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모임이다.

주로 행사일정, 참가인원,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진행방법, 기타 행정사항 등 관련 세부 시행사항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

실무접촉 장소로는 판문점이나 제3국이 이용된다. 판문점은 정진협정상의 규정에 의거 군사정진회담을 위한 장소로서 기본 성격상

남북한 민간인들의 접촉장소로서 적절치 않은 점이 있으나, 과거에 남북당국간 사전 연락과 주선으로 몇몇 교류행사의 실무접촉이 이루어진바 있다.

판문점 실무접촉은 남북교류행사의 공식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반대로 출입과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는 불리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판문점을 통한 접촉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실제 제3국에서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3국 실무접촉은 시간·경비가 다소 소요되나, 교류당사자가 별도의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점에서 편리하다.

나. 제3국에서의 교류

남북한 교류는 남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남북왕래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제3국에서의 남북교류가 상대적으로 성사가능성이 높다.

제3국에서의 교류는 제3국에서 개최되는 학술·문화·종교 등의 행사에 제3국과 함께 남북한이 동시에 참가하는 다자간의 교류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즉 제3국의 중개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북한과 제반 협의를 하고 남북한 당사자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개최되거나, 제3국 기관이 국제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남북한을 동시에 초청함으로써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있다.

제3국에서의 교류는 남북관계 상황 등 외부변수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북한의 호응도도 남북왕래교류 보다 높다는 점에서 초기의

남북교류 형태로 권장할만 하다. 특히 남북교류를 처음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3국에서의 교류를 먼저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제3국에서 교류를 추진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중개자의 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3국에서 교류는 중개자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되므로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세심히 살펴 보아야 한다.

(2)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행사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북한측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행사개최 비용은 물론이고 북한측과의 섭외비, 북한측 참석에 따른 경비 등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3) 북한의 무성의한 태도로 애로를 겪을 수 있다.

북한은 행사참석 여부를 개최일자에 임박해서 통보해줄 뿐 아니라 참석인물에 대해서도 미리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심지어 참석을 약속한 행사조차 뚜렷한 해명없이 불참하기도 한다.

다. 남북한 왕래교류

남북한 왕래교류는 제3국에서의 교류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대내외에 상징적인 측면도 큰만큼 조그마한 차질도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왕래 교류는 정부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거치 추진하여야 한다.

남북한 왕래교류와 관련한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변안전보장각서

남북한 왕래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시 하여야 할 것은 왕래자의 신변안전 문제이다. 남북왕래자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남북한 왕래에 있어 신변안전보장각서의 교환은 남북 당국간에 관례화되어 있다. 신변안전보장각서는 우리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북한은 사회안전상이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북한은 남북당국간 직접교섭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안전상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발급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교섭에 의한 경우는 북한의 초청주체가 해당기관에서 신변안전을 보장하였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초청장이나, 별지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발급해 준다. 초청장 및 신변안전 보장각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왕래경로

남북한 왕래경로로는 판문점을 통한 왕래와 제3국을 경유한 왕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판문점을 통한 남북한 왕래는 남북한 주민이 판문점을 통해서 상대방지역을 직접 왕래하는 경우로서 왕래절차에 대한 남북한 당국간

의 협의가 있는 후 가능하게 된다. 민간차원의 교류에서 판문점을 통해 왕래한 경우는 남북한 국악인들의 서울·평양공연('90)과 남북한 여성계 인사들의 남북여성세미나('91, '92) 참석을 위한 남북왕래를 들 수 있다. 또한, 6.15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서울-평양간 서해직항로를 이용하여 많은 왕래가 있었던 바, 평양 학생소년예술단, 평양교예단, 이산가족상호교환방문단 및 백두산관광단 등이 이 항로로 왕래하였다.

제3국을 통한 남북한 왕래는 남북한 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여 상대지역을 방문하는 경우로서 경유지로는 보통 중국 북경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제3국을 경유하여 북한을 방문할 때에는 북한대사관에서 별도의 북한방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일본의 전후처리문제 관련 평양회의('93), UNDP 관련 서울회의('93) 등이 중국 북경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한 예이다.

민주노총의 평양축구대회('99) 때에는 중국 북경을 경유하여 입북하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기도 하였다.

(3) 체류일정

체류일정은 보통 실무집축단계에서 남북 당사자간에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왕래경로 및 시간, 숙박장소, 행사장 및 진행방법, 관광 및 참관시설 방문, 부대행사, 이동경로 및 방법 등이 체류일정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체류일정은 방문자의 신변안전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반드시 정부와 사전 협의하에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1999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99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평양) 일정

일 자	시 간	일 정
'99. 8.10	오 전	○ 북경공항 출발(13 : 30)
	오 후	○ 평양도착(15 : 30)
	저 녁	○ 환영만찬(옥류관)
'99. 8.11	오 전	○ 만경대, 통일전선탑 방문
	오 후	○ 인민대학습당 방문
	저 녁	○ 동평양대극장 공연 관람
'99. 8.12	오 전	○ 금수산기념궁전 방문
	오 후	○ 평양제1고등중학교 방문
	저 녁	○ 노동자 축구대회 개막(양각도 경기장)
'99. 8.13	오 전	○ 삼원시멘트 방문 및 체육대회 참석
	오 후	○ 학생소년 궁전 방문
	저 녁	○ 노동자 축구대회(김일성 경기장)
'99. 8.14	오 전	○ 만수대 창작품 상점 방문
	오 후	○ 관문집 경유 귀환(17 : 45)
	저 녁	

3. 북한주민 접촉 · 교류시 유의사항

남북교류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 내실있는 행사진행과 함께 사석에서 이루어지는 언행까지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상호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화제로 대화

북한인사와 대화시 정치적인 내용을 화제로 삼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시킬 수 있어 가급적 피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적 주장

에 동조하거나 우리 사회를 비난하는 일도 없어야 하겠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 상호 이질화가 심한 대화주제 보다는 남북한 세시풍속, 일반적인 신변잡기 등 공통의 관심사를 화제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지나친 영어표현을 쓴다든지, 북한의 경제난에 대해서 언급하며 우리의 경제적 여유를 자랑한다든지 하는 과시성 언행도 삼가는 것이 좋다.

남북관계 현안문제에 대한 이해

북한인사들은 교류상대방, 남북한 관계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사전에 습득하고 나오는 경향이 있다. 특히 그 당시의 남북정세와 북한의 입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며 우리의 의견을 물어오거나 비판을 서슴치 않기도 한다. 이런 때를 대비하여 우리의 통일방안이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선물은 부담없는 것으로 교환

남북한 교류에서는 흔히 참석자들간에 선물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선물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치게 값비싼 물건이나 남한 제품이라는 표시가 한눈에 드러나는 것은 북한측 인사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선물대신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것은 더욱 삼가야 함은 물론이다. 반대로 북한인사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도 주의를 요한다. 북한측 선물에는 간혹 정치선전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선물은 단호히 거절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받은 후 관계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언론보도는 신중히

북한인사들은 남북교류행사가 사전에 우리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매우 꺼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 보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불참하기도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우리 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북한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는 남한당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표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남북교류행사를 개최하기로 협의한 사항을 사전 보도하는 문제는 북한과 협의되지 않은 경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 관련사항 누설금지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의 누설이다. 학술연구 또는 업무상 알게된 중요 정보를 부지불식간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제 4 장

남북한 교류협력 실태와 현황

1. 교육학술분야
2. 문화예술분야
3. 종교분야
4. 체육분야
5. 언론·방송·출판분야
6. 관광분야
7.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자) 승인단체 현황

1. 교육학술분야

가. 추진실태

(1) 개 황

학술분야는 사회문화분야중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던 분야이나, 직접적인 남북왕래교류 보다는 제3국을 통한 교류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학자들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제3국을 통한 학술교류 추진을 모색해 왔고, 제3국으로는 중국지역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 연변지역 교포 학자·단체들의 과거 북한과의 교류경험과 지리적 근접성 등을 활용하여 북한측을 남북학술교류의 장으로 쉽게 이끌어 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집근방법에 있어서도 연변지역의 교포 학술단체와 자매결연·연구원 상호교환 등으로 유대를 강화하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술교류를 추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개최시기는 하계 방학기간인 7~8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점차 다양화·정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분야는 타분야에 비해 활발하지는 않으나 남북 대학간 교류, 남북 교원단체간 교류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 1998년 성균관대, 강원대, 경남대, 총장의 방북이 성사되었고 1999년에는 경북대, 고려대 총장이 방북하여 대학간 교류문제를 협의하였다. 2001. 3. 1~6에는 사운연구소와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공동주관으로 일제 강제병합 남북공동 자료전시회 및 학술토론회를 평양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은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구 연변과기대 후원회)이 2001. 6. 5.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사업이 있다.

교육학술분야 북한주민접촉현황

1989. 6. 12~2001. 8. 31, 건(명)

연 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11 (11)	10 (10)	.
1990	50 (30)	47 (298)	13 (192)
1991	77 (505)	71 (498)	21 (348)
1992	71 (319)	65 (308)	10 (146)
1993	35 (190)	34 (190)	9 (50)
1994	28 (209)	22 (195)	6 (91)
1995	36 (367)	37 (339)	19 (282)
1996	44 (513)	39 (280)	21 (196)
1997	34 (414)	28 (399)	13 (321)
1998	49 (173)	46 (175)	21 (74)
1999	44 (621)	42 (314)	21 (276)
2000	77 (300)	67 (267)	26 (60)
2001	53 (138)	52 (137)	14 (46)
계	609 (4,061)	560 (3,410)	194 (2,092)

학술분야 남북한 왕래현황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 ('91.11.25~29, 서울)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 실행위원회(남)	남한: - 북한: 15	북한여성계 인사의 최초 남한방문
평양동북아경제포럼 ('92.4.28~5.4, 평양)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북) 동아시아경제연구원(미) 평양국제회의 일본실행위원회(일)	남한: 18 북한: 47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구상안에 대한 토론 및 현지시찰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세미나 ('92.9.1~6, 평양)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세미나 실행위원회	남한: 30 북한: -	남한여성계 인사의 최초 북한방문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국제토론회 ('93.11.6~9, 평양)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북)	남한: 2 북한: 11	중군위안부 피해보상문제 협의
일제 강제병합 자료전시회 및 남북공동토론회 (2001.3.1~3.6, 평양)	사운연구소(남)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북)	남한: 21 북한: 200	일제 강제병합에 대한 남북 공동자료전시, 토론회 및 공동성명

(2) 추진동향

(가) 한국학

한국학분야의 남북교류는 남·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한국학 연구학자들이 주로 언어·역사·철학분야에서 한국학에 관한 다방면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대규모 종합학술회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류현황

행사명	주최	참가자수	비고
제3차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 ('90.8.2~5, 오사카)	오사카경법대 아세아연구소, 북경대 조선문화연구소	남한 : 145 북한 : 11	북한학자 160여명 참석 예정이었으나 11명만 참석
구주한국학회 제15차 학술회의 ('91.3.22~26, 프랑스 듀르당)	구주한국학회	남한 : 15 북한 : 3	북한은 제13차 런던회의 ('89)부터 참가
고려학 소장학자 학술토론회 ('91.7.29~31, 연길시)	국제고려학회, 길림성 사회과학원	남한 : 75 북한 : 12	조국의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학술토론회 제의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 ('91.8.12~14, 연변대학)	연변대학	남한 : 45 북한 : 3	남북한 어문학 교류 및 독립운동사 연구제의
제4차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 ('92.8.20~22, 북경)	북경대 조선문화연구소, 오사카경법대 아세아연구소	남한 : 90 북한 : 29	국제고려학회 기업문제 등 논의
통일을 지향하는 철학 학술회의 ('94.2.20~23, 북경)	국제고려학회	남한 : 10 북한 : 4	통일에 이바지하는 철학과 종교에 대한 논의
코리아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학술회의 ('96.8.19~20, 북경)	송실대 사회과학연구원 국제고려학회 아세아문화	남한 : 12 북한 : 12	언어, 문학, 법학, 철학, 역사, 경제,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8개분과 논문발표
제20차 유럽한국학회 (AKSE) 학술회의 ('01.4.4~8, 런던)	유럽한국학회	남한 : 13 북한 : 4	문학·실학·고고학 등에 대한 논문발표

(나) 역 사

역사분야는 타분야에 비해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나 최근 들어 다소 침체된 느낌이다. 그동안 고대사 학술회의, 만주일원의 고구려유적 공동답사, 러시아 발해유적발굴 등의 분야에서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개성지역의 고려유적연구분야에서 교류가 추진되고 있다.

교류현황

행사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아시아학회 창립총회 ('90.3.15~18, 일본)	아시아 학회 창립위원회	남한 : 3 북한 : 2	남·북한, 일본, 중국이 참가하는 아시아학회 창립
제2차 아시아사학회 ('91.5.20~28,길림성)	길림성고교연구소 길림성사회과학학회	남한 : 16 북한 : 2	고구려유적 공동 답사
동북아 조선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세미나 ('93.4.15~17, 연변대학)	경희대 아시아·태평양 지역연구소 연변대 동북아 정치연 구소	남한 : 11 북한 : 4	언어·풍속 등 민족문 화 관련 학술토의
러시아연해주발해유적 발굴 ('93.5.27~6.13, 러시아 우스리스크시)	대륙연구소 러시아극동역사연구소	남한 : 3 북한 : 5	러시아 발해유적 발굴
고구려문화 국제학술회의 ('93.8.11~14, 집안시)	연변대 중국조선족연구회	남한 : 7 북한 : 5	무양총 등 집안일대 고 구려 유적 답사 및 학 술회의
동아시아 역사연구 국제 학술회의 ('94.8.1~5, 상해)	재단법인 천원·한국신 학연구소 상해 사범대학	남한 : 10 북한 :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아세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원시·고대문명의재검토 학술회의 ('95.8.4~6, 오사카)	오사카검법대	남한 : 10 북한 : 4	고조선사 연구 발표
조선장학회100주년기념 고대사 심포지움 ('00.11.24, 동경)	조선장학회	남한 : 3 북한 : 2 일본 : 1	백제, 신라, 고구려, 발해 역사연구발표

(다) 경 제

경제분야는 동북아지역의 경제권 형성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경제분야의 각종 학술회의를 나진·선봉지역 투자유치활동과 연계, 적극 활용하고 있다.

1992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동북아 경제포럼에 우리측 관계전문가 18명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교류현황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제3차 동북아경제공동체 국제심포지움 ('90.10.9~12, 북경)	국민대 중국문제연구소 중국 아·태경제연구소	남한 : 5 북한 : 3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관한 논의
동북아지역 경제발전과 협력회의('91.1.28~2.1, 정춘·연길)	갈림대학	남한 : 13 북한 : 8	동북아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연구성과 교류등 협의
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회 창립총회 ('91.7.17~19, 북경)	동북아경제공동체추진연구회	남한 : 1 북한 : 2	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회 총본부 사무유치 등 협의
동북아경제기술발전 국제연토회 ('91.8.29~31, 정춘)	중국 아·태연구회 UNDP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남한 : 19 북한 : 3	두만강유역 동북아 경제기술발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
동북아국제협력세미나 ('91.8.27~9.1, 신양)	요녕성	남한 : 21 북한 : 4	동북아지역간 경제협력방안 토의
한동해경제권 국제심포지움 ('91.11.22, 오사카)	이사히신문사	남한 : 1 북한 : 2	남북한, 일본, 소련, 중국의 경제교류 협의 및 두만강개발개회 논의
동북아경제협력 국제학술회의 ('92.2.3~5, 싹뽕오)	NIRA, NPRARC	남한 : 2 북한 : 2	동북아경제협력문제 논의
동북아시아개발 비교연구 국제학술회의 ('92.7.10~12, 연변)	연변대 동북아경제연구소	남한 : 21 북한 : 5	동회의의 연례개회 및 관계자료 교환협의
동북아지역경제협력포럼 ('92.8.25~28, 톨리디보스톡)	하와이 아·태연구소 톨리디보스톡 해양연구소	남한 : 10 북한 : 4	자유무역지대 설치 및 두만강유역 개발 등
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회 제2차 전체이사회 ('93.4.18~20, 천진)	동북아 경제협력 민간협회	남한 : 3 북한 : 3	'위해 및 만해지역 자원 공동개발', '나진, 청진, 선봉항개발', 연구과제 채택 제3차 이사회 평양 개최 제의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동북아시아 경제발전과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학 술회의 (’94.7.16~25, 연경)	김립대학	남한 : 6 북한 : 4	두만강개발 현황 논의
21세기 동북아시아 국가 간 협력방안의 전망 학술 회의 (’94.8.18~19, 심양)	경희대 아·태연구소 요녕대학	남한 : 8 북한 : 5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 방안 논의
21세기 동북아 국제학술 회의 (’95.7.18~21, 심양)	경희대 아·태연구소 요녕대학	남한 : 7 북한 : 5	21세기 동북아의 경제발 전과 도약성에 대하여 논 의
니이가타 동북아시아 경 제회의 (’96.2.7~9, 니이가타)	니이가타현 한양문화 경제연구소 UN	남한 : 10 북한 : 5	동북아시아 경제교류 문 제논의
반해만 경제협력의 전망 학술회의 (’96.5.8~12, 심양)	사회과학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요녕대학	남한 : 12 북한 : 6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 및 산업 시장
니이가타 동북아 경제회의 (’98.2.17~19, 니이가타)	니이가타현 한양문화경제연구소	남한 : 6 북한 : 5	동북아시아협력방안, 수 송네트워크, 관광개발등 논의
제8차 동북아 경제포럼 (’98.7.28~29, 도토리)	도토리경제연구소	남한 : 31 북한 : 4	북한 임태덕 「대외경제협 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협력’ 발언

(라) 통일안보

통일안보분야의 남북교류는 한반도 평화유지 방안 및 통일문제 관
련 남·북한 및 주변국의 관계전문가들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학
술회의 성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분야의 학술회의에서 북한은 체제선전이나 정치적 주장으로 일
관하는 경향이 있어 교류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순수 학술차
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교류현황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제2차 아세아·태평양지역 대회·평화·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90.9.4~6, 블리디보스톡)	소련과학아카데미	남한 : 3 북한 : 5	아세아태평양지역 정 치·경제문제 논의
동북아 안보회의 ('91.3.23~25, 북경)	미조지아공대 전략연구 소 중국세계관찰연구소	남한 : 3 북한 : 3	남북한 경제협력 및 한 반도 안보문제 도의
동북아시아 국제회의 ('91.5.27~9, 동경)	요미우리신문사 조지워싱턴대학 중소기업 연구소	남한 : 3 북한 : 4	군축문제 논의
제7회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국제학술 심포지움 ('91.5.31~6.2, 동경)	한태평양연구소 아사히신문사	남한 : 3 북한 : 4	군축문제 논의
제1차 북한·미국 학술 회의('91.6.3~7, 하와이)	하와이대 한국연구소	남한 : 3 북한 : 3	군축문제 논의
제8회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국제학술 심포지움 ('92.5.17~18, 동경)	한태평양연구소 아사히신문사	남한 : 11 북한 : 3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 해 토론하는 연례적 국 제학술 심포지움
북태평양 안보협력 회의 ('92.5.22~23, 오타와)	캐나다평화안보연구소	남한 : 2 북한 : 2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비통제 및 신뢰구축 문제 논의
하와이 6개국 국제학술 회의('92.6.23~25, 하와 이)	Pacific Forum CSIS(국제전략문제연 구소)	남한 : 2 북한 : 3	한반도 통일문제 논의
'92 상해유엔 군축회의 ('92.8.17~19, 상해)	UN군축국	남한 : 3 북한 : 2	화학무기군축 및 다자 간 안보협력 논의
제2차 한반도 통일문제 심포지움('93.4.16~17, 버클리대학)	버클리대 한인학생회	남한 : 5 북한 : 4	핵·군축 등 남북통일 문제 토론

행사명	주최	참가자수	비고
세계 대학생 과학평화 세미나 참가('94.6.21~ 26, 북경)	세계대학원리연구회	남한 : 27 북한 : 20	남북한 및 각국 대학생 들이 한반도를 중심으 로한 세계평화 논의
제1차 동아시아 차세대 정치인 회의('94.8.3~8,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국민전선	남한 : 7 북한 : 4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 전·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남·북한 및 해외 한인 학자 통일학술회의(제1 회) ('95.7.31~8.1, 북경)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북한 사회정치학회	남한 : 16 북한 : 6	한반도 통일의 3대원 칙, 통일의 방식, 남북 한 화해·협력 등 논의
제5차 한반도 통일문제 상포지움('96.4.19~22, 버클리대학)	버클리대 한인학생회	남한 : 3 북한 : 3	통일방안, 평화협정, 남 북대화 및 교류논의
'96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 학술도론회('96.8.5 ~6, 런던)	한반도통일연구회	남한 : 4 북한 : 3	통일문제에 대한 남 북한 및 해외교포들의 의 견 발표
남·북한 및 해외 한인 학자 통일학술회의(제2 회) ('96.9.13~15, 북경)	한국통일학술포럼 북한 사회정치학회	남한 : 21 북한 : 9	정치화해, 평화체제 및 군사문제, 경제사회 교 류 및 협력 등 논의
남·북한 및 해외 한인 학자 통일학술회의(제3 회) ('97.9.29~30, 북경)	한국통일학술포럼 북한 사회정치학회	남한 : 15 북한 : 11 해외 : 3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남·북한 및 해외 한인 학자 통일학술회의(제4 회) ('98.2.20~21, 북경)	한국통일학술포럼 북한 사회정치학회	남한 : 7 북한 : 7	화해, 교류협력, 평화체 제구축과 긴장완화 방 안 모색
남·북한 및 해외 한인 학자 통일학술회의(제4 회) ('99.10.27~28, 북경)	한국통일학술포럼 북한 사회정치학회	남한 : 29 북한 : 10	남북의 평화와 통일 등 토의
제5차 남북청년학생동 일세미나('99.7.25~7.2 9, 북경)	세계평화청년연합	남한 : 143 북한 : 60	통일조국 창건을 위한 청년의 역할
남북한 해외 한인학자 통일학술회의(제5회의) ('99.10.26~10.27, 북경)	한국통일학술포럼 북한 사회정치학회	남한 : 26 북한 : 10	남북의 평화와 통일 등 토의

(마) 과학기술

과학기술분야는 비정치적인 분야로서 남북교류의 전망이 밝고 북한 측도 다른분야에 비해 많은 수의 인원이 참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교류현황

행사명	주최	참가자수	비고
현대물리학 국제위타산 ('90.7.16~18, 북한)	연변대학	남한 : 18 북한 : 5	물리학분야 학술교류
제11차 세계지동제어연맹 총회('90.8.13~16, 소련)	세계지동제어연맹	남한 : 2 북한 : 3	지동제어분야 학술교류
제6차 동해 및 동지나해 해안학술회의 ('91.4.22~27, 후쿠오카)	일본구주대학	남한 : 25 북한 : 3	해양학분야 학술교류
'91 국제과학기술 학술대 회 ('91.8.19~24, 인경시)	조선과학기술자협회 연변과학기술협회	남한 : 87 북한 : 45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공동협약체 구성, '92 국제과학기술학술회 평양개최 등 제의
'91 전자·정보·통신 국 제학술회의('91.8.21~23, 인경시)	연변대학	남한 : 44 북한 : 10	'92 전자·정보·통신 국제학술회의 평양개최 제의
'91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제1차) ('91.8.5~10, 인경시)	국어정보학회 연변과학기술협회	남한 : 24 북한 : 25	한국정보처리에 관한 학술발표 및 관련기기 전시
'95 전자·정보·통신 국 제학술회의('95.8.7~12, 인경)	대한전자공학회 연변과학기술협회	남한 : 72 북한 : 10	전자·정보·통신분야 학술논문 발표
'95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제2차) ('95.9.14~16, 인경)	국어정보학회 북한과학기술총동맹 연변과학기술협회	남한 : 35 북한 : 20	컴퓨터를 이용한 우리 인 정보처리 논의
'95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제3차) ('95.8.12~14, 인경)	국어정보학회 북한과학기술총동맹 연변과학기술협회	남한 : 28 북한 : 10	정보처리 용어, 시판매서, 저술서, 부호계 등의 문 과매서 남북한 사용권 고인 채택
'99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제4차) ('99.8.12~14, 인경)	국어정보학회 북한과학기술총동맹 연변과학기술협회	남한 : 25 북한 : 0	최초로 남북한 합의에 의해 정보기술용어사전 발간
'01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 ('01. 2. 22-24, 인경)	국어정보학회 북한 과학기술총연맹 조선이 신식학회	남한 : 50 북한 : 15 중국 : 40	국제표준화가군 등목을 위한 부호계 연구, 컴퓨 터차관 연구, 남북한· 중국의 서체개발자료 산출교환

(바) 언 어

언어분야는 남북한 언어이질화와 관련하여 남북한 학자들 사이에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주로 한국학 관련 학술회의의 언어분과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언어이질화 문제를 단일 주제로 하는 회의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서울대 이현복 교수와 북한 해산사범대 로길용 교수는 폴란드 바르샤바대학에서 “남북한 언어비교연구”라는 공동 연구를 한 바 있다.

1996년 8월 장춘에서 개최된 한국어언어학자 국제학술회의에서는 국립국어연구원과 북한 국어사정위원회 관계자들이 앞으로 어문규범을 개정할 때에는 지금보다 더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는데 합의하기도 하였다.

교류현황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남북한 언어비교 공동 연구('91.6~'92. 6)	이현복(서울대 교수) 로길용(해산사범대 교수)	남한 : 북한 :	남북한의 교과서, 신문, 잡지 등에 나타나는 이질화된 언어의 추론, 검토 비교 연구
동양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학술회의 ('93.8.28~31, 북경)	국제고려학회	남한 : 10 북한 : 7	언어, 철학분야 한국학 학술회의
KOREAN 규범문제외 관련된 국제학술포럼회 ('95.8.3~4, 연경)	연변대학	남한 : 10 북한 : 4	한국어 언어규범 논의
한국어 언어학자 국제학술회의 ('96.8.5~7, 장춘)	국립국어연구원 북한 국어사정위원회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남한 : 5 북한 : 6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에 대한 남북어문규범 논의

나. 교류방향

남북학술교류는 한국학·역사·경제·통일안보 분야 등에서 제3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한 왕래 교류행사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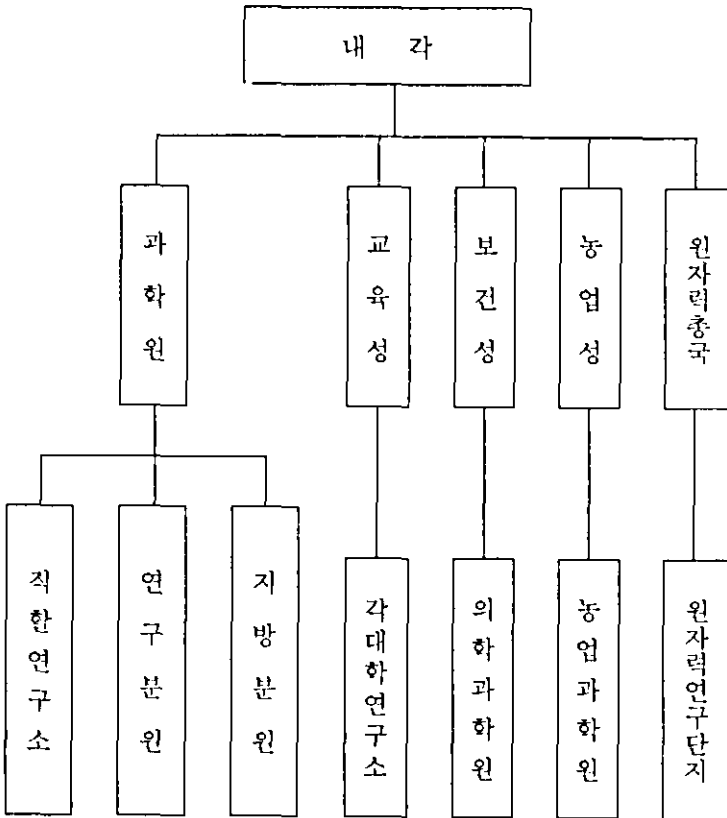
또한, 6.15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학술기관·단체들이 북한과의 학술교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남북한 당국간에도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교수·대학생·문화계인사 방문단의 시범적 상호교환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활발한 교류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남북학술교류가 남북상호 이해증진과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각종회의 등 권위있는 민간학술단체의 주도하에 순수 학문분야의 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진학문 분야로 집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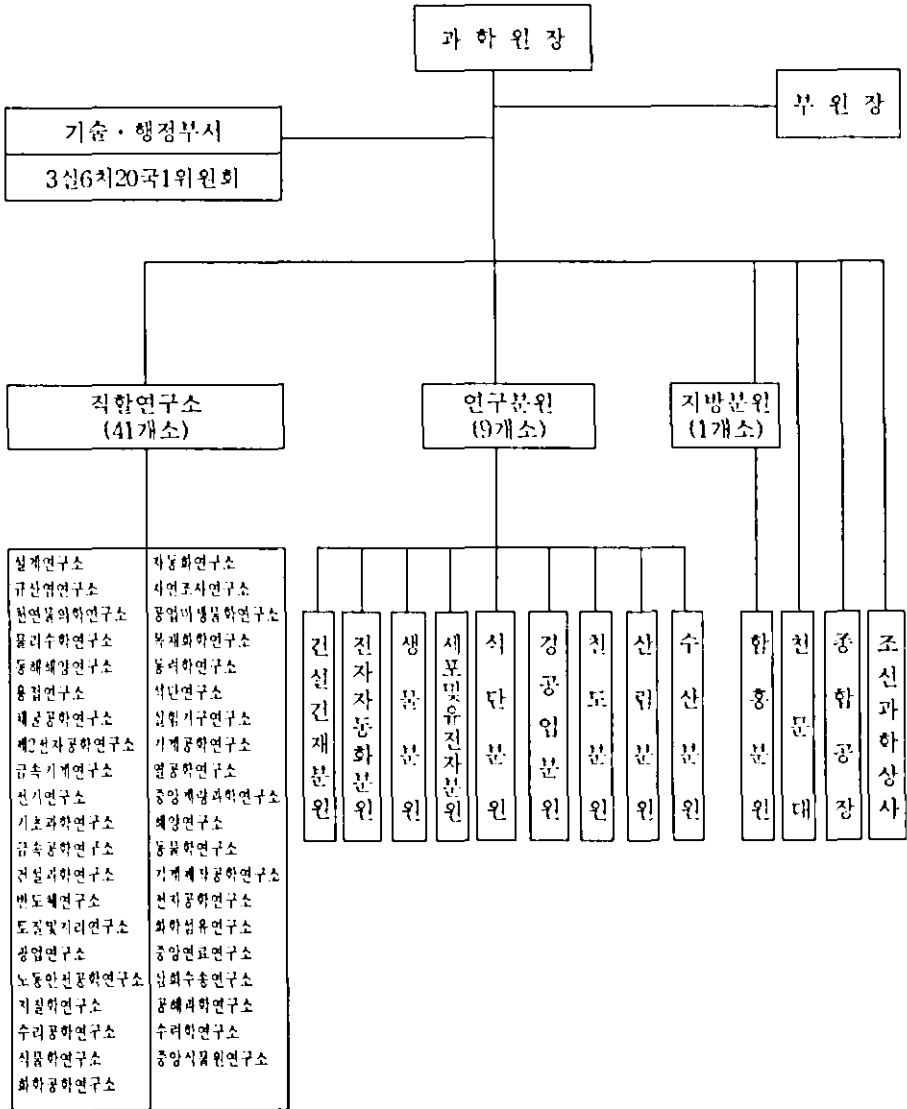
또한 자료·정보교환→분야별 학술회의 공동개최→대학·연구기관 간 자매 결연→공동연구·편찬사업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 북한 과학기술기관 · 인명 현황

과학기술 기관체계



과 학 원



• 출처 : 2000 북한개요(통일부, 1999)

연구 기관

〈과학원〉 원장 : 리광호

기 관	책임자	기 관	책임자
지리학연구소	김정락	기계공학연구소	차동만
지진학연구소	김형갑	조종기계연구소	김영민
지진연구소	리철원	과학실험기기연구소	박영선
입석역학연구소	리용업	열공학연구소	정금산
수리공학연구소	양영집	육체화학연구소	김응모
수학연구소	장재부	연료연구소	김경재
용접연구소	채현목	선광공업연구소	미 상
전력및원격조종연구소	김준홍	전기연구소	최원경
원자력연구소	박광우	방사화학연구소	리성근
해전자연구소	미 상	물리학연구소	남홍우
물리학및용품연구소	미 상	화학공업연구소	미 상
9월27일연구소	조선경	해지탕사연구소	고연수
노동안전공업연구소	미 상	건설경제및기준연구소	미 상
레이자연구소	미 상	애국복합미생물센터	최승복
전자지동화과학분원	리선봉	생물분원	김성근
세포및유전자공학분원	미 상	건설간재분원	변응희
금속분원	미 상	기계분원	미 상
경공업과학분원	변석천	합흥분원	리효선

〈사회과학원〉 원장 : 태형철

기 관	책임자	기 관	책임자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 혁명역사연구소	박인근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 청년운동사연구소	러형만
고고학연구소	김용남	역사연구소	정창규
몽골문제연구소	김구식	언어학연구소	문영호
법학연구소	한석봉	국제법연구소	미 상
철학연구소	전하철	주체문학연구소	류 만
민속고전연구소	김승필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김하권
경제연구소	김원삼	무역경제연구소	손종철
국제관계연구소	김봉환	발해연구소	미 상

〈기타〉

기 관	책임자	기 관	책임자
국제문제연구소	김광우	조국통일연구원	리종혁
세계경제및남남협력연구소	리재호	중업과학기술정보연구소	김철영
4월13일연구소	김응철	중업품질및계량과학연구소	김철문
중업공업연구소	미 상	중업광업연구소	리대세
중업선계건설계산소	서재희	중업과학기술동보연구소	김동신
백두산건축연구원	홍리표	조선고려악기술헤터	리역세
조선컴퓨터센터	백세윤	평양프로그래밍센터	최주석
자연에너르기개발리용센터	김강봉	집적회로시험공장	류용수
조립일봉직장	미 상	농업과학원	계영삼
주체과학원	현수길	경공업과학분원	리주용

<대학>

기 관	책임자	기 관	책임자
김일성종합대학	박관오	김책공업종합대학	홍서현
고려성균관대학	김효관	김형직사범대학	홍일천
인민경제대학	윤기정	김일성방송대학	양형섭
평양의학대학	리원길	치과대학	김승두
국제관계대학	정동욱	평양외국어대학	김기선
평양농업대학	전시건	평양공업대학	이홍용
평양영화대학	김우철	평양음악무용대학	김두일
평양미술대학	럽병옥	평양체육대학	김남모

• 출처 : 북한기관 · 단체별 인명집(통일부, 2000)

2. 문화예술분야

가. 추진실태

(1) 개 황

남북문화교류의 실적은 1997년까지는 저조한 상태를 면치 못했으나, 1998년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문화예술분야와 경제적 실리를 연결시키는 북한측의 입장변화로 인하여 현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분야에서 실제로 남북 현지에서의 행사가 남북한 공동참여로 개최된 것은 1985년 고향방문단 행사를 제외하면 「'90년 송년통일전 통일음악회」(서울)와 「평양 범민족통일음악회」(평양)가 처음이었다. 이후 오랜 공백기가 있었으며, 1998년에 들어서야 「리틀엔젤스」(한국문화재단)와 「윤이상음악회」(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의 평양공연이 성사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남북 음악회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고조되었고, 1999년 초부터 후속 서울공연 및 클래식과 국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주제로 한 방북공연 등을 추진하는 업체가 많아졌다. 1999. 12. 5 (주)코래콤과 SBS가 주최한 「2000년 평화·친선 음악회 - 로저 클린턴 평양공연」이 열렸고, 12.20에는 SN21엔터프라이즈와 MBC가 주최한 「민족통일음악회」(평양)가 개최되었다.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은 1998년부터 이루어졌는데, 1998년에는 「남북공동사진전」, 1999년에는 「'99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양·서울공연」, 「민족통일음악회 방북공연」, 「평양교에

단 서울공연], 2000년에는 「북한 문화자료 정보화사업」, 「남북한 합작영화 ‘아리랑’ 제작」, 「남북공동 애니메이션 제작」, 「금강산 가극단 한국방문 공연」 그리고 2001년에는 「‘춘향전’ 남북합동 공연」, 「3D 단편 애니메이션 남북공동 제작」 등 1998년부터 2001년 6월까지 총 10건에 대한 협력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하였다.

이 분야 협력사업은 다른 사회문화협력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북측의 사업상대자 또는 협상의 초기 창구로 하고 있다. 금강산국제그룹이 「아태평화위」와 남측 사업자를 연결하는 중개자로 나선 경우도 많았다. 1998년 8월에 처음 발족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가 사업 상대자로 나시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문화예술분야 북한주민접촉 현황

1989. 6. 12~2001. 8. 31, 건(명)

연 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4(4)	3(3)	
1990	26(78)	20(72)	4(50)
1991	66(457)	44(417)	8(209)
1992	39(142)	39(142)	2(81)
1993	19(71)	18(68)	2(21)
1994	20(126)	17(112)	4(32)
1995	25(120)	22(110)	9(69)
1996	13(51)	9(48)	3(40)
1997	20(101)	18(90)	9(74)
1998	48(167)	47(172)	27(75)
1999	58(164)	51(146)	30(98)
2000	62(213)	62(217)	36(155)
2001	39(127)	38(126)	6(24)
계	439(1,821)	388(1,723)	140(926)

문화예술분야 남북공동행사 개최현황(제3국 제외)

행사명	내 용
평양법민족 통일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0.10.14~10.24 ○ 장소 : 평양 2.8 문화회관, 동평양대극장 ○ 발탁 : 서울천동음악연주단 대표 휘번기 등 17명 ○ 내용 : 평사조 '마음이 지척이면' 등 16곡 연주
90주년동인 전통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0.12.8~12.13 ○ 장소 : 서울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 발탁 : 평양민족음악단 단장 심동춘 등 33명 ○ 내용 : 북악곡 동주 '도라지' 등 20여곡 연주
백두에서 한라까 지 렌즈로 본 조 국(남북공동사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8.5.29~6.11 ○ 장소 : 서울(5.29~6.11), 부산(9.4~9.12) ○ 참가 : 한국사진학회, 조선사진기동맹중앙위원회 ○ 내용 : 남북 사진작가들의 작품 56점(남 33, 북 53) 전시 * 사진전(254점 수록) 발간
리듬엔젤스 평양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8.5.2~5.12(3회 공연) ○ 장소 : 평양 문화예술극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 발탁 : 리듬엔젤스 예술단 38명 포함 66명 ○ 내용 : 한국전통무용, 한국가곡, 세계만요 등
윤이상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8.10.30~11.7(3회 공연) ○ 장소 : 평양 모란봉극장, 윤이상음악당 ○ 출연 : 안동혁, 윤인숙, 안숙선, 김덕수 등 14명(남) 국립교향악단, 윤이상관현악단(北) ○ 내용 : '그대' '사랑가' '관주여 영원히' 등 18개곡 연주
2000년평화친선 음악회 - 오저 강린단 평양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9.12.2~12.8(12.5 1회 공연) ○ 장소 : 평양 문화예술극장 ○ 발탁 : 매디김, 최진희, 태진아, 신운도, 김진, 잭스키스 등(北) 조해경, 김영순, 석민희, 래임옥 등(남) 오저 강린단(미) ○ 내용 : 「아름」, 「사랑의 비모」, 「봉선화」 등 20곡
민족통일 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9.12.18~25 ○ 장소 : 평양 문화예술극장 ○ 발탁 : 신형원, 안치환, 현천, 김종환 등(北) 백미현, 김승희, 김숙녀 등(남) ○ 내용 : 「아침이슬」, 「눈물젖은 두만강」, 「봄맞이처녀」 등

행사명	내 용
평양학생소년 예술단서울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00.5.24~30 (총5회 공연) ○ 장소 : 서울 예술의 전당 ○ 방남 : 평양학생소년예술단 단장 최희 등 102명 ○ 내용 : 「반갑습니다」 등 노래, 연주, 무용 3부 부문 18개 곡목 공연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00.5.29~6.11 (총11회 공연) ○ 장소 : 서울 잠실신내체육관 ○ 방남 : 평양교예단 단장 김유석 등 102명 ○ 내용 : 단련비행기, 난위기 등 12개의 추종곡과 5개의 예비 종목 공연
남북교향악단 함동연주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00.8.18~24 (총4회 공연) ○ 장소 : 서울 KBS홀, 예술의 전당 ○ 방남 : 조선국립교향악단 단장 허이복 등 132명 ○ 내용 : 「몽선화」, 「동무생각」, 「청신벌에 공년이 왔네」 등 11~14곡 연주
금강산 가극단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00.12.15~17 ○ 장소 : 서울 리들맨펜스 예술회관 ○ 방남 : 조총련소속 금강산 가극단 단장 이철준 등 82명 ○ 내용 : 「아리랑」, 「몽선화」 등 노래, 무용 공연
춘향전 방북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01.2.1~2 ○ 장소 : 평양문화예술극장 ○ 방북 : 남원시립국악단 임아조 등 35명 ○ 내용 : 南 참무극 춘향전 공연(2.1), 北 민속가극 춘향전 공연(2.2)
민족웃전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01.6.2~6.9 ○ 장소 : 평양 청년중앙회관 ○ 방북 : 이영희(‘메종드이영희’대표) 등 50명 ○ 내용 : 한복패션쇼 2회 및 의상 전시
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01.6.14~6.24(평양), 8.14~23(서울) ○ 장소 : 서울 - 세종문화회관, 평양 - 인민대학습당 ○ 방북 : 홍희표(동해대학교 총장) 등 8명 ○ 내용 : 백두대간과 독도등의 사진 100점 전시(남북 각 50점)

(2) 추진동향

(가) 음 악

1985년 제1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시 우리 대중가수들이 평양에서 공연한 바 있으며, 제3국에서 개최된 행사로서는 1991년 일본에서 열리고 남측 중앙국립관현악단 52명과 북측 평양음악무용단 등 60명이 참가한 『통일예술제』(’92.8.17~8.18, 사할린)가 있다.

1990년의 『범민족통일음악회』, 『송년통일진통음악회』는 평양과 서울의 교환공연으로 의미가 깊은 행사였다. 1998년 『리틀엔젤스 평양공연』과 『윤이상음악회』의 성사 이후 1999년 들어 후속 서울공연(만경대학생소년공진예술단 윤이상음악단 등)을 추진해왔으나 이루어지지 않는 못했으며, 대신 인기 대중가수들이 방북하여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12.5), 『민족통일음악회』(12.20)가 남북합동공연으로 성사되었다. 2001년에는 6·15 남북정상회담을 경축하는 대규모 방남공연으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5.24~30)과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8.18~24)가 이루어졌다.

남북합동음악회 등을 추진함에 있어 남한측에서 선호하는 북한 예술단은 정치성이나 신진·선동성보다는 시정성이 강한 대중가요들을 불러 인기를 끌고 있는 ‘보천보전자악단’이나 ‘왕재산경음악단’ 등이 고, 전해영, 엄청 등 대중가수들이다.

(나) 미 술

『남북코리아 서화전』(’91.5.27~5.29, 베이징), 『코리아통일미술전』(’93.10.12~10.24, 도쿄·오사카) 등이 처음으로 성사된 남북미술

전시회들이다. 금강산국제그룹측에서 북한 만수대창작사와 공동으로 주최한 『코리아통일미술전』은 이후 『코리아평화미술전』으로 이름을 바꾸어 1999년 제76회 동경전시회까지 일본 각지에서 꾸준히 개최되어 오고 있다.

1998년에는 도시출판 학교제에서 금강산 미술기행 목적으로 방북(8.25~9.1)하였고,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의 방북단에 서양화가 황창배가 동행하여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1999년 들어서는 일본의 『코리아평화미술전』에 참여해온 남한의 화가들이 「제1차 원로화가 북녘산하기행」의 이름으로 북한을 방문(8.31~9.6)하고, 이 기간 중 그린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남북교역이 증가하면서 북한 그림, 공예품 등 미술품에 대한 반입도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북한 최대의 미술가 집단인 만수대창작사와 직접 인건하여 작품을 구입(주문제작 포함), 국내의 전시회 등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다) 영화합작

최초의 남북영화교류라 할 수 있는 『뉴욕남북영화제』가 '90.10.10~10.14의 기간 동안 뉴욕에서 남한측 영화인 31명과 북한측 8명이 참가하여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남북한영화 각 7편씩이 상영되었다. 그러나, 이후로 '90년대가 끝날 때까지 유사한 사례는 다시 찾아볼 수 없었다.

술한 영화인들과 영화제작사들이 『임꺽정』, 『장길산』, 『아리랑』 등 민족적인 소재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의 배우가 출연하고 북한 현지촬영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영화합작을 구상해 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유사한 수십 건의

집속신청 중에 성사된 것은 단 서너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국이 주도하여 교육과 선전 목적으로 제작하는 북한영화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예술영화든 상업영화든 남북공동제작은 북한측으로서는 한걸 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고도의 노동집약산업인 애니메이션 분야에 북한의 숙련된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그 결과 2001년에는 남측 하나로통신과 북측 삼천리총회사간에 3D 애니메이션 『게으른 고양이 덩가』 공동제작이라는 걸실을 기두었다. 만화영화 제작은 영화합작보다는 북한측의 직접적인 부담이 적고 사업성도 높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북한과 관련한 기타 영상물 제작에서는 줄곧 북한의 자연경관, 문화유적, 기타 비정치적 북한실상 취재, 주요 인물 인터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해왔다. 이러한 시도들에는 대개 남한의 언론사 및 방송사와 (이들이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독립프로덕션 및 기획사가 주체가 되었는데, 일부는 단순한 시도로만 끝나지 않고 북한 방문승인 또는 협력사업승인을 얻어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방영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라) 영상물교류

북한에서 만들어진 영화 등 영상물에 대해서는 남북한 적교역의 경우에는 반·출입(통일부)과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수입추천(문화관광부)으로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다. 수입추천은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물론 절차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나, 심사기준에 일관성이 없었다거나 통일부-문화관광부간에 기준이 크게

상이해서 혼란이 초래되었다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었다. 문제는 판권계약에 서명한 북한측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정보부족이었다.

영화의 경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대남사업총관), 조선영화수출입사(해외수출담당), 조선대외영화합작사(영화합작담당), 목란비대오사(비디오테잎판권취급), 각급 영화촬영소 및 편집사(실제작담당) 중 어느 곳에서 해외, 특히 남한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제3국의 중개업체를 기치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북한측에서 창구 일원화를 위하여 내부체제를 정비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공표한 적은 없다.

북한의 도서, 음반,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 필름 및 영화·비디오필름 포함), 엽서·연하장은 반출·입의 승인을 요하는 품목이다.<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3조> 이중 이념성·정치성이 있는 것은 “특수자료”로서 일반에의 공개 및 활용이 불가능하나(국가정보원 특수자료취급지침), 그외의 영상물들은 “일반자료”로서 별다른 제한이 없다. 다만, 반입신청-승인과정에서 내용에 따라 일부분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활용에 있어서의 제한 등이 승인조건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98년말과 '99년초에 북한영화의 반입 및 수입(제3국 경유)이 증가하였고, TV방영도 집중되었다. 최초로 TV에서 방영된 북한영화는 「안중근 이동박문을 쏘다」(SBS '98.9)로서 이후 「입격정」(KBS '98.10), 「온달전」(MBC '99.1) 등이 연달아 방영되었다. 예상만큼 시청율이나 호응도는 높지 못했다. 또한, 방송사들이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기 전에 성급하게 방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적분쟁도 자주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99년초 이후로는 북한 영화의 방영 시도 자체가 격감하게 되었다.

2000년 최초로 북한영화 『불가사리』가 극장에서 상영된 바 있으며, 최근 『살아있는 영혼들』이 극장 상영 목적으로 수입추천을 받은 상태이다.

북한 영화 수입추천 현황(문화관광부)

신청업체 *계약상대자	영화제목	처리결과 (처리일)	*함용내역
SN21 엔터테인먼트 *조선영화 수출업자 (일본 서해무역)	『만수근 이등박문을 쏘다』	수입추천 (’98.11.6)	*SBS방영 (’98.9.1)
	『불가사리』	*	
	『영양진』	*	*MBC방영 (’99.1.3)
(주)IMS *조선영화수출업자 (중국 심양고려민족 문화연구원)	『인객성』 (5부작)	수입추천 (’98.8.24)	*KBS방영 (’98.10.17~)
(주)나래필름 *조선영화수출업자 (중국 조선영화회사)	『살아있는 영혼들』	수입추천 (’00.8.23)	극장 상영

북한 영상물 반입승인 현황

신청업체 *계약상대자	제 목	반입목적 (처리일)	*활용결과
우인방 커뮤니케이션 *조선이세아태평양 권회위원회	『임꺽정』 (5부작)	TV용 '98.10.14	.
	『홍길동』	"	.
(주)IMS *조선영화수출입사 (중국 신양고려민족문화 연구소)	『금강산 기록영화』 (30분 14개)	TV용 '98.10.20	KBS방영
	『도라지꽃』	TV용 '98.12.10	국회의원 회관 상영 (12.11)
	『모심목』	TV용 '98.12.16	.
(주)프레스 *조선목판 미디어회사	『소년장수』 (만화영화, 1-25편)	TV용 '99.1.16	.
	『얼리한 너구리』 (만화영화, 1-23편)	"	.
PD연합회 *조선영화 수출입사	『해운동의 두 가정』 『나의 어머니』 『먼 훗날의 너의 모습』 『가족 농구 선수단』 『차매들』 『노래여 너와 함께』 『당매와 뱀다리』	시사회용 '99.3.18	북한영화 시사·도론회 1편 상영 (4.20)
(주)레니어	고려악센스기지, 석양제약공장	광고제작용 '99.6.9	
(주)현대아산 *광명성총회사	천하전승금강산	판매용 '00.3.8	
PD연합회 *목판미디어회사 (중국 천진 제무의 유한공사)	임진왜란 3부작	TV용 '00.8.25	
제네시스 *평양녹화발전사 (조선민족문화 연구소)	민요마라 삼천리 7개	TV용 '00.10.27	

(라) 문 학

한국문인협회, 한국펜클럽, 한국시인협회 등 국내 권위있는 문학단체들이 남북문학인 교류를 제의하는 등 여러 번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북한측의 응답이나 성과는 없다.

근래에는 남북 문인들간의 순수한 문학교류 보다는 북한 문학작품의 국내 출판이 늘어남에 따라 남북간의 저작권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 출판되어 있는 대부분의 북한 서적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며,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북한 문학작품들 중 일부를 우리 문학지에 실거나 평론의 대상으로 삼아 인용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으며, 1998년에는 『시안(詩眼)』 창간호에 북한 『조선문학』에 실렸던 시인들의 시를 옮겨 실고 남한측에서 이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마) 사 진

1994년 「코리아나 사진전」(’94.9.26~30, 인길)이 열리, 남(85점)과 북(85점), 그리고 조선족 동포들(46점)이 모두 216점의 사진작품을 전시하게 되었다.

1998년에는 한국사진학회가 조선사진가동맹을 사업상대자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남북 사진작가들의 작품 56점(남 33점, 북 53점)이 서울과 부산에서 전시되었고, 총 254점의 풍경사진이 수록된 사진집이 길과물로서 발간되었다. 이는 1997년부터 한국사진학회가 중국에서 「국제한민족 사진전」 등을 일으키면서 북한측과 접촉해온 결실이다.

이외에도 재호주교포 사진작가 백남식이 2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사진전(「백남식남북한마당」(98.12), 「백두산 4계절 사진전시회」(2000.2)을 연 적이 있었으며, 언론사들의 방북이 이루어지면서 동행했던 사진기자들의 방북성과물들과 금강산 관광에서 찍은 사진들에 대한 전시회 등이 서울에서 이어진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2001년에는 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개최, 남측의 작가들이 평양전시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바) 기 타

1991년 사할린에서 남북합동(남측 120명, 북측 80명)으로 「'91 남북통일전통미용문화풍속제」가 개최되어 진도북춤·농악 등을 공연한 바 있다. 1997년에 열린 「제4회 아태지구분재 전시회」는 남측 대표단 3명과 북측 4명이 참가하였다.

나. 교류방향

남북간의 정치적인 통일보다 더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심각하게 이질화된 두 사회의 통합이며, 그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문화적 이질성과 갈등의 극복이다.

남북교류에서 실현가능한 공통분모를 찾기 위하여 이제까지는 고유의 민속·전통문화와 관련된 것부터 제안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남북에 존재하는 '현재'의 문화를 서로 나누고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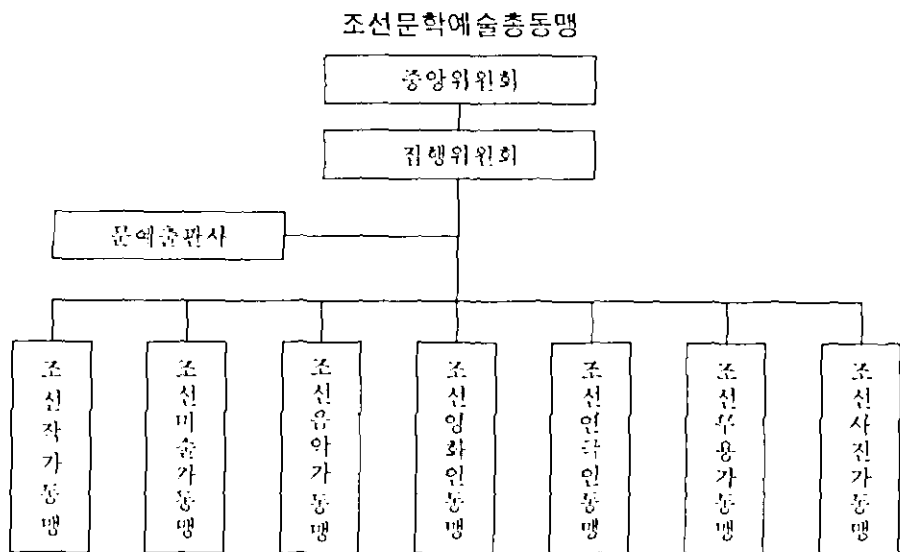
물론 문제는 북한측이 지나치게 정치성과 이념성에 경도된 데 있다. 남한의 정치가 민주화되면서 예술이 어떤 의미에서는 탈정치화

하는 동시에 보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주장들을 담아내게 된 것과는 달리, 북한의 예술은 여전히 획일적인 하나의 메시지가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분야의 남북교류를 북한측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주된 수입원 중의 하나로 간주하게 된 것도 최근의 경향이다. 이러한 북한측의 '대가' 요구에 부응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후원사나 협찬사를 끌어모아 자금을 조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당연히 광고와 흥행이 사업의 중심에 놓이게 될 수 밖에 없었다. 실현 가능한 아이템이 워낙 적다보니 동일 사업에 대한 관련 업체간의 경쟁도 심화되었다. 지속적이고 신도있는 교류보다는 이벤트성 행사가 늘어나게 된 것도 추세로 분석할 수 있다. 물론 남북 문화교류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서는 내용과 이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분야의 교류에서는 북한측의 한정된 관심과 수용도를 최대한 파악하고 활용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교류부터 시작하되 단계적·점진적으로 범위와 수준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북한 문화예술기관 · 인명 · 시설 현황



- 주 : 각 동맹사하에는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각 시·도에는 중동맹 시·도위원회와 창작단 동맹 시·도위원회가 있다
- 출처 : 『문학예술사건』 中 (1991), p. 502

주요 연극단

(중앙)

단 체 명	인 원
국 립 연 극 단	180명
평 양 연 극 단	120명
평 양 청 년 연 극 단	80명
중 앙 방 송 연 극 단	60명
인 민 군 연 극 단	80명
인 민 보 인 성 연 극 단	80명
청 도 심 인 극 단	80명

주요 가극·무용·예술단

단 체 명	내 용
피 바 다 가 극 단	1946년 북조선가극단으로 발족, 1971년 7월 17일 피비더가극단으로 개편, 약 380명
만 수 대 예 술 단	1946년 평양가극단으로 창립, 1969년 9월 27일 만수대예술단으로 개칭, 약 300명
평 양 청 년 가 극 단	약 200명
국 립 가 무 단	약 200명
국 립 회 극 단	1994년 12월 창립
국 립 가 극 단	약 200명
청 도 성 예 술 단	약 150명
인 민 군 합 주 단	1947년 창립, 약 180명
인 민 보 안 성 예 술 단	약 150명
국 립 교 향 악 단	약 150명
국 립 만 족 예 술 단	1947년 창립, 약 160명
방 송 예 술 단	약 160명
엄 화 밋 방 송 음악 단	1958년 창립
평 양 학생 소 년 예 술 단	약 300명

주요 박물관·기념관·전람관

명 칭	설립일	내 용	비 고
금수산기념궁전 (평양시 대성구역 미암동)	1977.4.15	김일성시신 안치 및 김일성 유품 전시	김일성관저인 「금수산의사당」으로 사용하다 확장하여 1995.6.12 현 명칭으로 개칭하고 1995.7.8 개관
조선혁명박물관 (평양시 만수대 언덕)	1948.8.1	김일성의 항일혁명 활동 및 사회주의혁명 투쟁과정의 사적물 및 자료 전시	· 1961.1 '국립중앙해방투쟁박물관'을 개칭 · 1972.4.24 만수대로 신축 이전
당창건사적관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	1970.10	노동당 창립과 관련된 자료 및 사적물 전시	해방직후 김일성이 사용하던 노동당 중앙위 건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	1953.8.17	항일혁명기의 자료, 6·25 당시 인민군 자료·병기류 전시 및 김일성 업적 선전	1974.4.11 '조국해방기념관'을 개칭, 확장건립
조선중앙력사박물관 (평양시 중구역 대동운동)	1945.12.1	원시사회에서부터 19세기까지의 역사적 유물과 문헌자료 전시	1978.2.12 김일성 현지교시
조선미술박물관 (평양시 중구역 대동운동)	1954.9.28	기원전 3~4세기부터 현재까지의 미술품 전열	1965.3.11 김일성 현지교시
국제친선전람관 (요항산)	1978.8.26	김일성에게 보내온 146개국 인사들의 선물 28,000여점 중 일부 전시	건물내부의 천장, 벽에 '김일성화' 치장
보천보혁명박물관 (량강도 보천군 보천읍)	1955.8.7	1937.6.4 「보천보진두」 관련자료 및 김일성의 현지지도 사적자료 전시	1963.6 구건물앞에 현대적 고건물 신축, 1977년 전연체개 및 자료보충 정비
왕재선혁명박물관 (함북 은성군)	1975.10.1 9	김일성의 1930~40년대 「항일투쟁」 활동 자료 전시	당원 및 노동자들에게 김일성의 혁명역사를 학습시키는 정치학교 기능
조선민속박물관 (평양시 중구역 대동운동)	1956.2.10	민속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연구사업 및 군중교양사업도 전개	1960.6.10 김일성 현지교시

주요 회관·궁전·학습당

명 칭	설립일	내 용	비 고
4·25문화회관	1975.10.7	노동성 및 인민군의 사 상·문화 교양장소	극장(6,000석·1,100석) 연회관(600석)
청년 문화회관	1989.5		극장(2,000석, 600석) 다기실,홀(1,000명)
인민문화궁전	1974.1.1	문화·오락시설을 구비한 북한주민들의 휴식, 학습, 문화, 교양 장소	대회의장(3,000석), 원탁회의장(930㎡), 휴게실, 연회관, 당구장 등
평양학생소년 궁전	1963.9.30	평양시 청소년들의 특면과 외활동 장소	극장(1,100석), 체육관(500명 수용), 도시권(200석) 등
만경대학학생 소년궁전	1989.4	청소년들의 특면과외활동 장소	극장(2,000석) 체육관, 수영장
안반대학습당	1982.4.1	「전사회의 영예리화」를 위한 종합전시관	전시능력(3,000㎡권), 1일 수용능력(1만2,000명)

• 출처 : 2000 북한개요(통일부, 1999)

극 장

명 칭	설립일	내 용	비 고
*만수대예술극장	1977.1.1	관람석 : 4,000석	북한 최대 극장
평양대극장	1960.8.13	관람석 : 2,200석 최대 무대공연 인원 : 2,000명 종합 연습실 : 700명	가극공연 외 각종 기 념 행사 개최
평양교예극장	1989.4	관람석 : 3,500석	평양축전 시선
동평양대극장	1989.5.18	관람석 : 3,500석	평양축전 시선
국제영화회관	1989.5.18	관람석 : 3,150석	평양축전 시선
문화예술극장	1985.6	관람석 : 2,000석, 800석	현대적 무대공연 장비
형승대극장	1984.4.15	관람석 : 2,500석 소극장 : 700석	김일성 지사로 건설

• 출처 : 영의 표와 통일

• 평안북도공연장 수직했던 관객석들에 의하면, 만수대예술극장의 800석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고 시설면에서도 상당히 낙후하였다고 함.

주요 문화예술기관 · 단체인명

분 야	기 관 명	직 위	성 명
업 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총 장	조영화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총 장	리준영
	조선인민군4.25예술영화촬영소	총 장	윤두환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총 장	최재현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총 장	김천진
	조선번역영화제작소	소 장	박 심
	조선중앙영화배급소	소 장	리준희
	대중과학영화제작단	단 장	리성환
	만경대촬영단	단 장	우계년
	영화작품국기심의위원회	위 원 장	리승환
	조선국가영화운동고	총 지 배 인	박순태
	조선영화과학연구소	소 장	천두익
	조선영화수출입심사	사 장	최학래
	조선대외영화제작사	사 장	박찬섭
	조선영화문학창작사	사 장	리준구
	평양필름현상소	소 장	리윤의
	평양연극영화대학	학 장	리경삼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초급당비서	서동연
	극장관리위원회	부 위 원 장	신응호
	예 술 단	평양예술단	단 장
평양만경대에술단		단 장	정춘화
만경대에술단		단 장	박영신
국립민족예술단		단 장	김억만
만수대에술단		단 장	리학범
평양학생소년예술단		단 장	김시범
지경도에술단		부 단 장	김 목
평양북도에술단		단 장	김웅성
함경북도에술단		초급당비서	박정애
강원도에술단		단 장	김인복
평양청년학생예술단		단 장	박병섭

분 야	기 관 명	직 위	성 명
극 장	동평양대극장	관 장	미 상
	봉화에송극장	부 지 배 인	원 종 직
	모란봉청년아외극장	관 장	홍 기 옥
	만수대에송극장	관 장	김 광 호
	평양오션극장	관 장	미 상
	평양웃음극장	관 장	미 상
	락원영화관	지 배 인	서 선 천
기 타	조선예술교류협회	회 장	김 창 국
	조선공인협회	회 장	장 철
	평양교예단	단 장	홍 재 식
	모란봉교예단	단 장	박 명 수

• 출처 :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통일부, 2000)

3. 종교분야

가. 추진실태

(1) 개 황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제정이후 2001년 8월까지 종교분야의 북한주민집속신청 건수는 385건으로 이중 329건이 승인되어 143건이 성사되었다.

남북한의 종교교류는 1991년 광선회(소망교회) 목사의 북한방문 이래 기독교계 목회자의 간헐적인 방북에 이어 최근에는 남북 종교인 평화모임(2000.3.26~28)등 범종단 차원의 북한방문도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 종교인 접촉은 주로 북경, 금강산 등지에서 이루어지지만 일상적인 내용은 FAX를 이용하고 있다.

종교분야 북한방문 현황

1989.6.12~2001.8.31, 건(명)

연 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1 (1)	1 (1)	1 (1)
1990	.	.	.
1991	1 (1)	1 (1)	1 (1)
1992	1 (1)	1 (1)	1 (1)
1993	.	.	.
1994	.	.	.
1995	6 (16)	3 (6)	2 (2)
1996	1 (1)	1 (1)	.
1997	6 (19)	4 (11)	3 (4)
1998	20 (98)	18 (82)	10 (51)
1999	11 (45)	10 (42)	9 (39)
2000	10 (49)	10 (49)	9 (47)
2001	13 (123)	9 (65)	6 (53)
계	70 (354)	58 (259)	42 (199)

종교분야 북한주민접촉 현황

1989.6.12~2001.8.31, 건(명)

연 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10(10)	5 (5)	.
1990	16(97)	15 (96)	2 (51)
1991	40(155)	37 (142)	13 (86)
1992	38(140)	30 (117)	7 (54)
1993	19(65)	16 (62)	1 (1)
1994	23(97)	16 (85)	4 (68)
1995	42(213)	33 (187)	12 (94)
1996	26(249)	16 (203)	7 (133)
1997	30(141)	26 (134)	13 (90)
1998	55(214)	51 (202)	35 (150)
1999	32(222)	32 (218)	20 (148)
2000	43(185)	41 (187)	21 (118)
2001	11(91)	11 (90)	8 (80)
계	385(1,879)	329 (1,728)	143 (1,073)

종교분야 주요 북한방문 내역

방 목 자	방 목 목 적	방 목 기 간
세인트앤지외교총회 - 총무 : 이대건 목사	북한기독교회 관계자 및 교회 방문	'89.7.29~8.12 (평양)
소망교회 - 권선희 목사	평양 봉수교회 선교 및 북한선교 활동	'91.9.24~10.1 (평양)
KNCC - 총무 : 권호건 목사	남북기독교간 교류협력 방안 협의	'92.1.7~1.13 (평양)
소망교회 - 권선희 목사	남북교회 선교 및 협력방안 협의	'95.8.22~8.29 (평양)
KNCC(2명) - 총무 : 김동원, 김영주 목사	남북교회간의 교류 및 협력방안 모색	'97.9.23~9.30 (평양)
천주교서울대교구 민족화해 위원회(8명) - 최정무 주교, 오대순, 이기현 신부 등	평양 장충선단 미사 집전 및 북한 내 선대위원 혁명지역 답사	'98.5.15~5.22 (평양, 금강산) *전대원 신부 방북 포기
KNCC(승인 : 6명, 친화 : 2명) - 목사(5명) : 김동원, 민병익, 박종화, 홍기길, 김성근 - 신부 : 이재진(동인위원장)	남북교회지도자 교류 및 협력방안 모색	'98.5.26~6.2 (평양 등)
민족통일선교협회(목사4명) - 신현교(이서정), 구본충, 이태리, 김기윤	북한교회 선교 및 북한교회 실태 파악 등	'98.6.30~7.7 (평양, 금강산 등)
천주교청교구한진국사재단 (신부 : 11명, 승인 : 9명, 친화 : 2명) - 문규환(회장), 한세웅, 김승준, 전종훈, 박승원, 안종희, 문정현, 리수현, 박기호	평양 장충선단 축성 10주년 기념미사 참사 등	'98.8.11~8.17 (평양 등)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 (목사8명) - 윤희곤, 김용주, 이호문, 진태수 등	북한지역 교회복원 예정지역 답사 및 북한교회 실태 파악	'98.9.26~10.3 (평양, 원산 등)
KCRP(2명) - 김용진 신부(회장), 변전홍	남북 종교인 교류협력문제 협의 및 대북지원 공공 분배권과 확인	'98.11.21~11.28 (평양, 요청산 등)

방 복 자	방 복 목 적	방북기간
민족화합남북교추진위원회 - 스님(3명) : 최지선, 오성조, 한명신(방북포기) - 기타(2명) : 유전희, 김기창	북한불교 신태파악 등 남북한 불교 교류문제 협의	'99.6.8~15 (평양 등)
대한불교진각종(4명) - 김선관(동리원장), 김상균(총무부장), 박종두(종의회 의장), 장지현(전사)	북한불교 신태파악 및 남북한 불교 교류 방안 모색	'99.9.18~25 (평양, 묘향산 등)
민족화합남북교추진위원회 한기중(명진) 상임집행위원장 등 3명	북한불교 신태파악 등	1999.11.23-30 평양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신권수(법사) 공동의장 등 4명	북한지역 사찰답사 등	1999.12.7-14 평양
KCRP 김영은 명예회장 등 4명	북한지역 종교문화유적지 답사 등	1999.12.11-18 평양
KCRP 변진홍 등 31명	남북종교인 평화모임 개최	2000.3.26-29 평양
조국통일기도동지협의회 전요한 등 7명	부합전 연합예배 개최	2000.4.7-14 평양
강리회 서부연회 윤희곤총무외 5명	평양신학원 개원협의	2000.7.15-22 평양
대한불교 진각종 김선관동리원장 외 5명	불교복지시설 건립협의	2000.9.19-26 평양
평민협 신권수회장 외 1명	윤이선 5년 추모법회 개최	2000.11.1-7 평양
대한불교 천태종 박종현 총무부장과외 11명	불교교류 협의 및 유적답사	2000.11.21-25 평양
남북종교인평화모임 변진홍 KCRP 사무총장 등 31명	6.15~8.15 관련행사 협의	2001.3.26-29 급강산
부합전 연합예배 전요한 조국통일 기도동지협의회 회장 등 7명	부합전 연합예배 개최	2001.4.7-14 평양

제3국 개최 남북종교 교류현황

행 사 명	내 용
제1차 기독교 동경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0.7.10~7.13 ○ 장소 : 동경 ○ 참가 : 남측 35명, 북측 5명 ○ 내용 : 평화통일과 남북기독교 교류현의
제2차 기독교 동경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1.7.9~7.12 ○ 장소 : 동경 ○ 참가 : 남측 24명, 북측 5명 ○ 내용 : 평화통일과 남북기독교교류현의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제4차 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1.10.28~11.2 ○ 장소 : 키두만두 ○ 참가 : 남측 11명, 북측 2명 ○ 내용 : 아시아 종교인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공동방안 논의
남북한불교대표자 연석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1.10.28~11.4 ○ 장소 : 로스앤젤레스 관음사 ○ 참가 : 남측 22명, 북측 4명 ○ 내용 : 남북불교교류현의
제3차 기독교 동경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2.10.20~10.22 ○ 장소 : 동경 ○ 참가 : 남측 36명, 북측 5명 ○ 내용 : 평화통일과 남북기독교교류 현의
제4차 기독교 동경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4.5.31~6.2 ○ 장소 : 동경 ○ 참가 : 남측 63명, 북측 5명 ○ 내용 : 평화통일과 남북기독교교류 현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4차 기독교 국 제협의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5.3.28~3.31 ○ 장소 : 교토 ○ 참가 : 남측 31명, 북측 5명 ○ 내용 : 8.15 판문점 공동예배 논의

행 사 명	내 용
미주 평화통일 회년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5.6.26~6.29 ○ 장소 : 로스앤젤레스 ○ 참가 : 남측 9명, 북측 7명 ○ 내용 : 평화통일 회년대회 및 통일세미나
광복50주년 기념 미주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5.7.19~7.24 ○ 장소 : 산시네티 ○ 참가 : 남측 35명, 북측 9명 ○ 내용 : 평화통일 회년에매 및 음악회 개최
남·북·해외 천주교인 뉴욕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5.10.27~11.2 ○ 장소 : 뉴저지 ○ 참가 : 남측 3명, 북측 5명 ○ 남북천주교교류 협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국제 에큐메니칼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6.1.29~2.2 ○ 장소 : 마키오 ○ 참가 : 남측 18명, 북측 5명 ○ 내용 : 평화통일, 대북 수재지원 방안 논의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 종교인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6.2.26~2.29 ○ 장소 : 북경 ○ 참가 : 남측 19명, 북측 8명 ○ 내용 : 범종단 차원의 남북종교행사로서 남북 종교인들의 역할 논의
제5차 기독교 동경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6.6.5~6.7 ○ 장소 : 동경 ○ 참가 : 남측 67명, 북측 5명 ○ 내용 : 평화통일과 남북기독교교류 협의
남·북·미 교회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7.3.17~3.19 ○ 장소 : 뉴욕 ○ 참가 : 남측 25명, 북측 5명 ○ 내용 : 남북교회간 교류협력 방안 협의

행 사 명	내 용
동일과 나눔 남북교회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8.3.16~3.18 ○ 장소 : 호주 시드니 ○ 참가 : 남측 17명, 북측 4명 ○ 내용 : 한반도의 통일 및 대북지원문제 협의
제6차 기독교 동경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8.10.8~10.10 ○ 장소 : 오사카 ○ 참가 : 남측 80여명, 북측 4명 ○ 내용 : 21세기 문명사적 전환과 우리 민족공동체의 미래 협의
종교인 북경 평화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9.4.24~4.27 ○ 장소 : 북경 ○ 참가 : 남측 29명, 북측 5명 ○ 내용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 논의
하얼빈 안중근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00.10.24~26 ○ 장소 : 중국 하얼빈 ○ 참가 : 남측 14명, 북측 6명 ○ 내용 : 안중근 의사와 민족통일 세미나 개최
기독교 후쿠오카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00.12.12~15 ○ 장소 : 일본 후쿠오카 ○ 참가 : 남측 130명, 북측 4명 ○ 내용 : 함께 만들어 가는 민족통일 등 토론

(2) 종교별 추진동향

(가) 개신교

개신교계의 각 교단이나 연합기관들이 종교교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 기독교인의 교류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주선으로 1986년 9월 20일 「제1차 클리온회의」에서 남한의 한국교회협의회(KNCC) 대표단과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대표단과의 접촉으로 계기가 마련되었다.

세계교회협의회 주관의 클리온회의는 1988년과 1990년, 1995년에도 계속 개최되었다. 「2차 클리온회의」(88.11)에서는 1995년을 「통일회년」으로 선포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제3차 클리온회의」(90.12)에서는 회년을 준비하기 위한 공동사업계획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1988년 제2차 클리온회의 이래 최근의 종교인 북경평화모임에 이르기까지 인례적으로 제3국에서 종교인들의 등 참석을 통해 접촉이 이루어져 왔다. KNCC 등은 이와 같은 대북접촉을 통해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에서 사용할 공동기도문을 1989년 이래 매년 조선기독교도인맹추과 합의해 오고 있으며 1997년 이래 매년 남북교회 부활절 공동기도문도 합의해 오고 있다.

1991년 9월에는 소망교회 확산회 목사의 방북이 성사되어 남한종교인의 북방방문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이후 간헐적으로 KNCC 인사 등의 방북이 성사되다가 '98년 이후 국민의 정부 포용정책에 힘입어 개신교계 인사의 방북이 증가되었다.

특히 기독교대한감리회 시무위원회는 사회문화협력사업자(2000. 5. 20취득)로서 평양신학원 재개원 사업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또한 조국통일기도동지협의회는 부활절 인함예배를 평양 천광·봉수교회에서 개최(2001. 4. 8)하였다.

(나) 불 교

불교계는 1998년 11월 「남북불교도교류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남북교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991년 10월 LA 관음사에서 개최된 「조국통일기원 불교도 합동법회」에서 남북불교인들의 접촉이 최초로 성사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없이 남북불교교류의 필요성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대한불교조계종측에서는 북한의 조선불교도인맹측과 북경 실무집측 등을 통해 1997년 이래 「부처님 오신날 봉축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을 채택하여 남북의 사찰에서 동시에 봉독해 오고 있다.

1999년 6월에는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최지선 스님 일행의 방북이 성사되어 분단 이후 불교계 최초의 공식적인 방북성사 선례를 구축하였고 묘향산 보현사에서 남북불교도합동법회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9월에는 대한불교진각종 김선관 통리원장 일행의 방북이 성사되어 북한 지역 사찰 답사 등을 통해 남북 불교도간 교류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다) 천주교

천주교계는 1982년 12월 12일 「북한선교위원회」를 설립하고, 바티칸라인을 통해 장의 신부가 1989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비동맹특별변자료회의에 참석하는 등 북한당국과의 직접대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1991년 9월에는 「북한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함께 도라산 전망대에서 평화통일기원 미사를 드리면서 평화통일 기원미사 합동봉헌, 남북한 합동성지순례 등 「대북제의 5개항」을 발표하였다.

1995년 10월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울대교구 장덕필 신부 등 7명이 「남북해외 천주교인 뉴욕세미나」에서 조선천주교인협회 장재철 일행과 만나 「민족의 화해와 일치」라는 주제아래 「조국통일을 위한 천주교인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1997년 6월에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최창무 주교 등이 장재철 일행과 북경에서 만나 「남북천주교인세미나」를 개최하고 남북한 천주교 신자의 상호방문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1998년 5월에는 최창무 일행이 방북하여 평양의 장충성당에서 천주교의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하였다.

1998년 8월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방북하여 평양 장충성당에서 8.15 성모승천대축일 기념미사를 봉헌하였으나, 일행중 문규현 신부가 북한측이 주도한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하므로써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라) 기 타

천도교는 1991년 10월 네판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총회에 인운길 교화관장이 천도교 대표로 참석하므로써 북한의 천도교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1993년 10월에는 오익제 교령이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류미영 위원장과 북경에서 만나 남북 천도교 교류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나, 1997년 8월 오익제 월북사건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1999년 8월에는 들어와 북측의 접촉제외에 의해 남북천도교대표회담이 북경에서 개최되었고 북측의 초청에 의해 천도교 중진급 교역자 3명의 방북추진 움직임이 있었으나 북측의 정치적 이용가능성이 우려되어 승인을 유보한 바 있다.

또한 대종교는 1991년 3월 「어천절(음력 3.15) 및 개천절(10.3) 제례 봉행등 문제협의」를 위해 대북접촉 승인을 받았으며, 1994년 4월 안호상 총전교가 북한의 류미영을 만나 개천절 등 전례행사 공동개최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5년 4월 안호상 총전교 및 김선직 종무원장이 어천절 행사 참가를 목적으로 불법입북하므로써 물의를 빚은 이래 개천절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한편 한국종교인 평화회의는 1999년 4월에 조선종교인 협의회와 종교인북경 평화모임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북경선언문도 채택하였다. 이어서 12월에는 조선종교인 협의회 초청으로 방북하여 남북종교인 교류증진방안도 협의하였다.

나. 교류방향

남북한 종교교류는 남북화해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교차원에서 순수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종교교류가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과 함께 종교인들도 아래 몇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범위내에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첫째, 북한 종교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교류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성급하고 경쟁적인 대북 종교교류 자세를 지양하고 이리 교단 및 종파간에 합의를 이루어 대표성을 가진 주체에 의해 일관되고 질서있게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각 종교계 내에서 대북 신교를 위한 연합과 일치를 모색하고 있고, 나아가 범종교적인 협력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셋째, 단순한 대북지원이나 일회성 행사보다는 남북협력사업을 통한 종교교류를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우리 종교계가 지금까지의 종교교류 경험을 토대로 단체별 특성있는 종교차원의 협력사업을 통해 종교교류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사회의 화해를 위해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은 막중하다. 따라서 우리 종교인들은 대북교류에 있어서 즉각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장기적 안목으로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꾸준히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 북한 종교단체 현황

단체명	시 기	현 황
조선종교인 협의회	198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들의 협의체로 결성 ○ 위원장 : 장제연(장제철)
조선불교도 연맹	1945.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조선 불교도연맹을 반족('65년~'71년 : 잠적)
	197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명칭으로 총현 ○ 위원장 : 박태화(박태호) ○ 사찰 60여개, 승려(대처승) 300여명, 신도 1만여명 ○ 교육기관 : ('89년 양강도 중흥사~'91년 평양 권법사)
조선그리스도 교연맹	1946.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조선 기독교도연맹으로 반족('64년~'73년 : 잠적)
	197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기독교도연맹으로 총현
	19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명칭으로 개명 ○ 위원장 : 강영선 ○ 교회 2개(복수교회 : '88년, 칠공교회 : '89년), 기적교회 520여개, 신·구약성서 및 찬송가 총편('83년~'84년), 성경전서 및 찬송가 총편('90년), 목사 35명, 전도사 300여명, 신도 1만2천여명 ○ 교육기관 : 평양신학원('72년~'95년, 2000. 9. 재개원)
조선기독교 협회	198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천주교인협의회로 총현
	19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명칭으로 개명 ○ 위원장 : 장제연(장제철) ○ 성당 1개(장충성당 : '88년), 신도 3,000여명, 신부·수녀 없음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 회	194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도교 북조선총무원으로 반족('49년~'73년 : 잠적)
	197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명칭으로 총현 ○ 위원장 : 류미영 ○ 신도 : 1만 5,000여명

• 출처 : 2000 북한개요(동양부, 1999)

4. 체육분야

가. 추진실태

(1) 개 황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제정 이후 2001년 8월까지 체육분야 북한주민접촉신청은 243건으로 이중 232건이 승인되었으며, 79건이 성사되었다. 동 기간 중 남북왕래교류로는 『남북통일축구대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평가전』,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통일농구경기대회』, 『통일탁구경기대회』 등이 이루어졌다.

체육분야 북한주민접촉 현황

1989.6.12~2001.8.31, 건(명)

연 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1 (1)	1 (1)	.
1990	15 (15)	15 (15)	1 (1)
1991	23 (89)	22 (86)	6 (46)
1992	16 (53)	13 (40)	2 (2)
1993	15 (35)	13 (32)	3 (6)
1994	11 (26)	11 (22)	2 (5)
1995	14 (15)	14 (15)	2 (2)
1996	14 (58)	14 (58)	6 (12)
1997	17 (74)	16 (71)	9 (20)
1998	36 (465)	34 (463)	13 (395)
1999	30 (96)	28 (79)	14 (29)
2000	32 (144)	33 (149)	15 (67)
2001	19 (63)	18 (60)	6 (18)
계	243 (1,134)	232 (1,091)	79 (620)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등으로 환기를 띠었던 남북체육교류는 북한이 유도선수 이창수의 망명(1991.8)을 구실삼아 기합의된 체육회담을 일방적으로 진민 중단시킨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999년 8월과 9월에 평양에서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통일농구경기대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특히 1999년 12월에는 북한 남녀농구팀이 남한을 방문하여 교환경기를 가졌다. 또한 우인방과 북한 아태·민화협 공동으로 통일염원 금강산 자동차 질주경기대회를 2차례('00, '01) 개최하였으며, 2000년 7월 28일에 평양체육관에서 삼성생명 탁구단과 북한 모란봉 탁구단이 참여한 가운데 친선 탁구 경기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한편, 국제체육대회에서도 남북한간 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 개폐막식에서는 사상 최초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KOREA” 이름으로 공동입장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남북관계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밖에도 1996년에는 제26차 아틀란타올림픽('96. 7), 제5회 동아시아호프스탁구대회('96. 8), 제19회 윌리엄존스배국제농구대회('96. 8), 국제프로복싱대회('98. 8), 제8회 동아시아호프스탁구대회('99. 8), 국제프로복싱대회('99. 8) 등에서 남북한 경기가 있었다.

(2) 주요 추진 현황

(가) 남북통일축구대회

분단 45년만의 첫 남북체육교류 행사인 「남북통일축구대회」는 1990년 10월 서울·평양간 교환경기로 개최되었다.

북한을 개방과 변화로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남북체육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1990년 9월 남북체육장관회담 및 실무회담 등 수차례 접촉을 통해 1990년 9월 28일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를 정식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평양대회는 10월 11일 5.1경기장에서 서울대회는 10월 23일 잠실주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구 분	행 사 내 용
남북통일 축구대회 평양경기 *남한체육인의 최초 북한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장소 : 1990.10.9~13(4박5일), 5.1경기장 ○ 방문자 규모 : 총 7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단 : 이재원 단장 등 45명(임원7, 남20, 여18) - 인솔단 : 정동선 체육부장관 등 11명 - 보도진 : 20명 ○ 방문경로 : 북경→평양(조선민항)→관문점→서울(육로) * '90북경 아시안게임 및 제1회 다이내스티컵 참가 후 곧바로 평양으로 출발 ○ 경기결과 : 북측 승리(2 : 1)
남북통일 축구대회 서울경기 *북한체육인의 최초 남한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장소 : 1990.10.21~25(4박5일), 잠실주경기장 ○ 방문자 규모 : 총 7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단 : 이현복 단장 등 45명(임원7, 남20, 여18) - 인솔단 : 김유순 조선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등 11명 - 보도진 : 22명 ○ 방문경로 : 관문점 경유 ○ 경기결과 : 남측 승리(1 : 0)

(나)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남과 북은 「남북통일축구대회」를 통한 남북한간 체육교류를 실현한 이후, 동 대회에서 고조된 남북체육교류의 열망을 수렴하기 위하여 1990년 11월 29일부터 1991년 2월 12일까지 남한측 장충식 수석대표와 북한측 김형진 단장 등 양측 체육회담 대표들이 4차례의 남북 체육회담을 개최한 결과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탁구종목에서는 1991년 2월 2차에 걸친 실무위원회를 통해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1963년 동경올림픽 단일팀 참가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체육회담을 개최한 이래 최초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1년 3월 16일 대한탁구협회 회장을 『협력사업자』로 하여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 및 참가를 『협력사업』으로 승인하고 우리 선수단의 합동훈련 등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최초의 남북간 『협력사업』으로서 우리 정부의 대북한 교류협력 정책이 구체적 사업으로 결실을 맺었다는데 그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관련 주요 합의사항

- 선수선발(총선수)
 - 남측 : 남자 6명, 여자 5명(11명)
 - 북측 : 남자 6명, 여자 5명(11명)
- 선수훈련
 - 장소 : 일본
 - 기간 : 1991. 3. 26~4. 23
 - 방법 : 합동훈련
- 선수단 구성
 - 단장 : 북측
 - 인원 : 남북 각 28명(총 56명)
- 소요경비
 - 선수훈련 및 대회기간중 소요되는 제경비는 남북 합동부담
- 필요장비 문제
 - 단복은 북측, 운동복 일체는 남측 준비
 - 개인지참 용구(탁구라켓등)는 남북 각각 확보
 - 공동사용 용구는 공동구입

(다)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1990년~1991년 남북 체육회담을 통해 합의한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에 관한 실무문제 협의를 위해 1991년 2월 2차에 걸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수선발 및 동 대회 단일팀 구성·참가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1년 4월 30일 제1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협력사업자』로 승인함과 아울러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를 『협력사업』으로 승인하였다.

이러한 협력사업의 승인과 함께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서울·평양 핑가진을 비롯한 강화훈련과 대회참가에 이르기까지의 2개월간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였다.

남북단일팀은 남북선수들이 한담어의 합동훈련 후 대회에 출전, 8강에 오르는 성적을 거두어 남북교류협력에 좋은 귀감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관련 주요 합의사항

○ 선수선발

- 선발방법 : 평가전(2회 개최)
- 선발인원 : 18명(남측 9, 북측 9)
- 선발진 일시 : 제1차 1991. 5. 4(토) 서울, 제2차 1991. 5. 8(수) 평양

○ 선수훈련

- 훈련장소 및 기간
 - 평 양 강화훈련 : 1991. 5. 10~5. 14
 - 서 울 강화훈련 : 1991. 5. 16~5. 20
 - 프 랑 스 강화훈련 : 1991. 5. 22~5. 26(남북쌍방 추후 합의)
 - 포르투갈 강화훈련 : 1991. 6. 6~6. 13
- 훈련인원 : 72명(남측 36, 북측 36)

○ 선수단 구성

- 단 장 : 남측
- 부단장 : 북측
- 인 원 : 남북 각 31명(62명)

○ 소요경비 부담

- 평가전 및 강화훈련 기간중 재반편의는 장소를 제공하는 측에서, 대회현지에서 소용되는 제경비는 남북이 공동으로 부담

○ 김단식 및 해단식

- 김단식 : 서울(강화훈련 직후)
- 해단식 : 평양(대회귀환 직후)

○ 필요장비 등에 관한 사항

- 단복은 북측, 운동복 및 기타 운동용품은 남측에서 준비
- 평가전은 트레이닝복과 경기복은 장소 제공측에서 준비

주요 일정

구분	성사내용	주요일정
서울 평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자 : 리명상 등 70명 ○ 방문기간 : 1991. 5. 6~5. 9 ○ 방문경로 : 평양 → 판문점 → 서울 ○ 경기연시 및 장소 5. 8(수) 15:00~17:00, 잠신주경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선수단 서울도착(5. 6) ○ 1차평가전(5. 7) ○ 북측선수단 평양귀환(5. 9)
평양평가전 및 강화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자 : 오원건 등 70명 ○ 방문기간 : 1991. 5. 10~16 ○ 방문경로 : 서울 → 판문점 → 평양 ○ 경기연시 및 장소 5. 12(일) 15:00~17:00, 5. 1경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선수단 평양이동(5. 10) ○ 2차 평가전(5. 12) ○ 우리측 선수단 일부(35명) 서울귀환(5.13)
서울 강화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자 : 리명상 등 72명 ○ 방문기간 : 1991. 5. 17~21 ○ 방문경로 : 평양 → 판문점 → 서울 ○ 훈련장소 : 잠신주경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강화훈련진행 (5. 17~5.20) ○ 코리아축구팀 간단식 및 리스본 항만(5. 21) ○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출전(5. 22~6. 26)
평양 해단식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자 : 장총석 등 33명 (추가2명 포함) ○ 방문기간 : 1991. 6. 21~7. 10 ○ 방문경로 : 서울 → 판문점 → 평양 ○ 경기연시 및 장소 5. 8(수) 15:00~17:00, 잠신주경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귀환 및 해단식 개최 (6. 28) ○ 우리측 선수단 서울귀환 및 환영식 개최(6. 29)

(라)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 이후 민간차원에서의 첫 남북간 교환경기는 1999년 남북 노동자간의 축구대회로 성사되었다.

남측의 「민주노총」과 북측의 「조선직총」은 남북노동자간의 축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1999년 8월 10일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37명의 선수단 및 관계자가 방북하여 2회에 걸쳐 남북간 경기 및 남북 혼합팀을 구성하여 경기를 치루었다. 민주노총은 2000년도 축구대회는 북한 선수를 서울로 초청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는 남북간의 순수민간급 체육교류로는 처음으로 남북간 접촉면과 인적교류를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행 사 명	주 요 내 용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99. 8. 10~8. 14 ○ 장소 : 양각도경기장, 김일성경기장(평양) ○ 방문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단 : 22명 - 인솔단 : 15명 ○ 방문경로 : 서울 → 북경 → 평양 → 판문점 → 서울 ○ 경기결과 : 8. 12(민주노총 4 : 직 총 5) 8. 13(연 대 팀 4 : 연합팀 4)

(마) 통일농구경기대회

1991년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서울·평양평가전 교환경기 이후 8년만에 체육교류가 재개되어 교환경기로 개최되었다.

「현대」-「아·태」간 「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민간급 체육교류에 관한 합의서」 체결('98. 10. 29)을 통해 농구경기 개최를 합의하

었다.

이에 따라 평양대회는 1999년 9. 28~9. 29간 평양체육관·평양농구관에서 서울대회는 1999년 12. 23~12. 24간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남녀혼합팀 2경기 및 남녀대항 2경기를 각각 치루었다.

이번 대회는 1991년 북한 축구선수단의 남한방문 이후 8년만에 최초로 북한 남녀농구선수단의 남한방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남북축구대회 정례화, 민속씨름대회, 교예단 공연 등 체육·문화·예술교류와 인적 왕래 활성화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나아가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분	행 사 내 용
통일농구경기대회 평양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장소 : '99. 9. 27~10. 1(4박5일) ○ 방문자 규모 : 7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단 : 강명구 현대전자 부사장 등 42명(임원 17, 남 13, 여 12) - 현대관계자 : 31명 - TV중계요원 : 6명 ○ 방문경로 : 북경 경유 ○ 경기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8 혼합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 단걸(104) : 단합(129) · 여자 : 단걸(133) : 단합(112) - 9.29 대항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 현대(71) : 아태버락팀(102) · 여자 : 현대(93) : 아태회오리팀(95)

구 분	행 사 내 용
통일농구경기대회 서울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장소 : '99. 12. 22~12. 25(3박4일) ○ 방문자 규모 : 6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단 : 송호건 이태 부위원장 등 62명(선수단 38, 교 예단 14, 위성중계 기술자 2, 아태 관계자 8) ○ 방문경로 : 목경경유 ○ 경기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8 혼합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 단걸(138) : 단합(141) · 여자 : 단걸(125) : 단합(133) - 9.29 대형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 현대(71) : 아태우회팀(86) · 여자 : 현대(86) : 아태회오리팀(84)

(바) 통일탁구경기대회

2000년 7월 28일 평양체육관에서 삼성그룹과 북한 아태의 공동주최로 『통일탁구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동 경기대회는 북한의 국가대표급 선수들로 구성된 모란봉탁구단과 남한의 삼성생명탁구단이 참여한 친선경기대회로서, 남녀 단·복식과 혼합복식 등 5경기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혼합복식의 경우 통일업원을 반영하여 남북한 혼성팀(자주팀, 통일팀)으로 편성되어 개최되었다.

금번 대회에서는 지난 91년 4월 제41회 지바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코리아팀으로 출전하여 여자 단체전을 우승한 이래 9년만에 남북한 탁구선수들간의 복식조가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편 방송사상 최초로 국내 방송사가 북한현지에서 동 경기를 직접 제작, 위성을 통하여 국내에 생방송되었으며, 북한 중앙 TV는 동 경기를 저녁시간에 편집·녹화방송하였다.

구 분	행 사 내 용
통일타구경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북기간 : 7.26-7.30 ○ 방문자 규모 : 4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단 : 박성민 부시장 등 15명 - 삼성 관계자 : 윤종용 부회장 등 15명 - TV 중계요원 : 4명 - 기타 지원인력 등 : 15명 ○ 방문경로 : 북경 경유 ○ 경기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단식 : 모란봉(2) : 삼성(0) - 여자단식 : 모란봉(2) : 삼성(0) - 남자복식 : 모란봉(2) : 삼성(0) - 여자복식 : 모란봉(2) : 삼성(0) - 혼합복식 : 통일팀(2) : 자주팀(1) * 경기 개최 전 삼성그룹이 평양체육관에 기증하는 진권판 점등식 개최

나. 교류방향

체육분야는 '90남북통일축구대회,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출전,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통일농구경기대회 등 어느 분야보다도 활발한 교류 경험을 갖고 있으며, 태권도시범단 교환사업·경평축구대회 개최문제에 대해 당국차원(남북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되기도 하는 등 체육의 비정치적인 성격을 감안해 볼 때 교류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하겠다.

또한 한동안 국제체육대회참가에 소극적이었던 북한이 '96 아틀란타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점차 국제체육무대에 나서고 있어 국제체육무대에서의 교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남북체육교류는 축구·탁구·농구 등 교류경험이 있는 종목의 친선경기,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수준이 대등한 종목의 교환경기, 체육계 인사의 상호방문 등 여러가지 형태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성사가 용이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체육기관·단체 인명

기관(단체)명	책 임 자	기관(단체)명	책 임 자
체 육 지 도 위 원 회	박명천	조 선 공 술 연 맹	송명호
조 선 올림픽위원회	박명천	조 선 권 투 연 맹	김재원
조 선 태 권 도 위 원 회	황봉영	조 선 농 구 협 회	김성환
조 선 탁 구 협 회	미 상	조 선 럭 비 협 회	김인국
조 선 족 구 협 회	미 상	조 선 레 슬 링 협 회	김영빈
조 선 배 구 협 회	김상복	조 선 요 트 협 회	미 상
조 선 사 격 협 회	전경문	조 선 유 술 협 회	김춘용
조 선 수 영 협 회	한영진	조 선 육 상 협 회	김태현
조 선 빙상경기협회	김남교	조 선 자 동 차 협 회	미 상
조 선 휘 거 협 회	랑경숙	조 선 정 구 협 회	미 상
조 선 아이스하키협회	미 상	조 선 집 단 체 조 협 회	미 상
조 선 역 기 협 회	장태식	조 선 체 조 협 회	강상관
조 선 아 구 협 회	미 상	중 앙 체 육 기 술 협 회	리경환
조 신 카 누 협 회	미 상	조 신 권 프 협 회	문법원
조 신 펜 상 협 회	미 상	조 신 바 도 협 회	박명천
조 신 낙 하 산 체 육 협 회	미 상	동 아 세 아 경 기 대 회 협 의 회	박명천
조 신 국 방 체 육 협 회	미 상	조 신 대 학 생 체 육 대 회	리창선
조 신 격 투 연 맹	김재원	조 신 마 라 손 협 회	강성두

주요체육시설 현황

<실내체육관>

명 칭	시 설 내 용	비 고
평양 체육관 (평양시 중구역 서성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 1973. 4. 8 ○ 좌석 : 2만 100석 ○ 용도 : 배구·농구·탁구·체조 등 18개 종목의 실내경기 및 군중집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최대의 실내 체육관 ○ 1979. 4. 제35회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개최
평양 병상관 (평양시 중구역 서성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 1982. 4. 7 ○ 좌석 : 6,000석 ○ 용도 : 스케이트·아이스하키·피겨스케이팅, 기타 배구·농구·전구장으로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 원주형 건물
창광원 수영장 (평양시 중구역 서성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 1980. 3. 21 ○ 좌석 : 2,000석 ○ 용도 : 수영·수구·다이빙 등 국제경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기록은 1/1,000초까지 측정 가능

<육외경기장>

명 칭	시 설 내 용	비 고
김일성경기장 (평양시 Moran봉 구역 개신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 1982. 4. 11 ○ 수용능력 : 10만명 ○ 용도 : 축구·육상·진단체조 및 각종 군중집회 장소로 활용 ○ 기타 : 인조잔디시설 및 야간경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란봉경기장'을 확장·개축후 1982. 4. 10 '김일성경기장'으로 개칭
5월1일경기장 (평양시 능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 1989. 5 ○ 수용능력 : 15만명 ○ 용도 : 육상·축구, 기타 각종 체육행사의 메인스타디움 ○ 기타 : 잔디, 야간경기 시설, 전광모니터 설치, 프레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축전'에 대비건설, 평양축전 개·폐회식장
양각도 축구경기장 (평양시 양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 1989. 4 ○ 수용능력 : 3만명 ○ 용도 : 축구·육상경기장으로 활용 ○ 기타 : 천연잔디, 야간경기시설, 기차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축전'에 대비 건설
동평양경기장 (평양시 동대원 구역 월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 1960 ○ 수용능력 : 4만명 ○ 용도 : 축구·육상 등 종합경기장 	

<종합체육단지>

명 칭	시 설 내 용	비 고
안골 체육촌 (평양시 만경대 구역 안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 1988. 9. 3 ○ 총관립식 : 5만석 ○ 총부지면적 : 175만여㎡ ○ 연건축면적 : 26만 7,000여㎡ ○ 주요시설 : 옥외 종합운동장 1개, 실내체육관 10개, 피로회복관, 시산호텔, 체육인 식당 등 <p><옥외 종합운동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산축구경기장(3만명 수용) <p><실내 체육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볼경기장(2,500명 수용) - 탁구경기장(4,500명 수용) - 권투경기장(4,500명 수용) - 종합경기장(2,500명 수용) - 배드민턴경기장(3,500명 수용) - 수영경기장(3,500명 수용) - 역도경기장(2,500명 수용) - 농구경기장(2,500명 수용) - 배구경기장(2,500명 수용) - 태권도전당(2,500명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추진'에 대비, 건설된 종합체육단지

• 출처 : 2000 북한개요(통일부, 1999)

주요 정기체육대회

대회명	목적	창설 및 개최	규모 및 종목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	김정일생일 (2.16) 기념	· 1977년 창설 · 매년 2~3월	○ 각 도·시 체육선수단 ○ 권투·유도 등 30여 종목 * 동계종목 포함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김일성생일 (4.15) 기념	· 1969년 창설 · 매년 4~5월	○ 각 도 및 중앙체육선수단 ○ 육상·축구 등 40여 종목
'오산덕상' 체육경기대회	김정숙생일 (12.24) 기념	· 1977년 창설 · 매년 12월	○ 각 도 체육선수단 ○ 농구·탁구 등 10여 종목
전국체육 구락부생 체육경기대회	선언선수 발령	· 1982년 창설 · 매년 8월	○ 축구·무선동전 등 200여 종목
공화국창건 기념 체육경기대회	정권창건(9.9) 기념	· 1977년 창설 · 매년 9월	○ 각 도·시 체육선수단 ○ 사격·수영 등 30여 종목
당창건 기념 체육경기대회	당창건(10.10) 기념	· 1975년 창설 · 매년 10월	○ 각 도·시 및 중앙체육선수단 ○ 육상·축구 등 40여 종목
'동창부활봉상' 체육경기대회	보창보전부 승리 (1937.6.4) 기념	· 1960년 창설 · 매년 6~7월	○ 각 도·시 체육선수단 및 각 지 체육구락부원 ○ 국방체육과 육상·씨름 등 30여 종목
공화국선수권 대회	우수선수발령 '전국체전' 성격	· 1979년 창설 · 매년 10~11월	○ 전문체육단 및 도체육단 ○ 축구·농구 등 40여 종목
인민체육대회	체육활동 대중화	· 1960년 창설 · '63(2회 대회) 부처 5년 주기 · 9~10월	○ 체육선수단부문과 일반부문으로 나누어 경기 ○ 구기·민속경기·국방체육 등 50여 종목
전승컵 체육 경기대회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	· 1964년 창설 · 매년 7월	○ 체육선수단 ○ 축구·육상 등 40여 종목
'9.5상' 대학생 체육대회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기념	· 1979년 창설 · 매년 3~4월	○ 각 도 대학생 ○ 농구·탁구 등 10여 종목
'집업봉상' 체육대회	학교체육 전문화 방침 지지 기념	· 1995년 창설 · 매년 10월	○ 각 도 일반학교 학생 ○ 축구·농구 등 10여 종목
'장자산상' 체육대회	학교체육 전문화 방침 지지 기념	· 1995년 창설 · 매년 10월	○ 각 도 일반학교 학생 ○ 태권도·탁구 등 10여 종목

· 출처 : 2000 북한개요(통일부, 1999)

5. 언론·방송·출판분야

가. 추진실태

(1) 개 황

1997년 말에는 중앙일보사 통일문화연구소의 '북한지역 문화유적 답사 및 조사사업'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이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동 연구소는 1998년 들어 협력사업승인을 받기 전후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방북하였다.

1998년은 언론교류의 해라고 불릴 만하다. 중앙일보 외에도 강향신문,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등이 두 차례씩 방북하여 언론교류와 문화교류에 대하여 북한측과 논의하였다. 이들 언론사를 통해 방북이 최초로 이루어졌고, 이들은 평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기사를 송고하기도 하였다.

1989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이래 '97년까지 순수하게 취재 및 촬영을 위한 방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98년에는 스포츠 아트가 최초로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하여 방북하였으며, 주요 언론사들의 방북리서를 따라 부산물로서의 영상물들이 남한측 방문자들의 손에 의해 직접 제작될 수 있었다. '99년에는 하반기에 월간 「말」 지 신준영 기자 등의 방북(평양 및 백두산 부근 취재)과 SBS 오기현 PD 등의 방북(조경철 박사의 동생 상봉, 평양 취재)이 성과로 기록되었다.

2000년도에는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하여 「남북 언론기관들의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고 통일실현언론활동, 비방중상 중지, 남북언론교류를 위한 기본사항에 합의하였다. 개별 언론사들의 북한 취재도 매

우 환발해졌다. 방송사들은 북한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 당국간 회담, 남북공동행사에는 대규모 취재단이 동행하였다.

지금까지 언론·방송분야에서는 모두 6건의 협력사업자 승인이 있었다. 이중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와 경향신문사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 그리고 독립프로덕션인 스포츠아트가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언론·방송·출판분야 북한주민접촉 현황

1989.6.12~2001.8.31, 건(명)

연 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4 (32)	-	-
1990	21 (49)	15 (43)	4 (22)
1991	31 (73)	28 (70)	13 (40)
1992	25 (148)	19 (136)	4 (24)
1993	14 (20)	10 (15)	-
1994	39 (85)	36 (79)	2 (2)
1995	36 (79)	30 (58)	1 (3)
1996	17 (41)	15 (44)	3 (6)
1997	19 (43)	15 (32)	5 (11)
1998	31 (53)	30 (54)	13 (22)
1999	31 (77)	31 (72)	9 (17)
2000	70 (273)	67 (268)	55 (246)
2001	24 (42)	23 (42)	10 (25)
계	362 (1,015)	319 (913)	119 (418)

언론·방송·출판분야 북한방문 현황

1989.6.12~2001.8.31, 건(명)

연 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	-	-
1990	-	-	-
1991	-	-	-
1992	1 (2)	1 (2)	-
1993	1 (2)	1 (2)	-
1994	-	-	-
1995	-	-	-
1996	-	-	-
1997	4 (12)	4 (12)	3 (11)
1998	12 (61)	10 (49)	10 (48)
1999	4 (9)	3 (7)	2 (5)
2000	16 (167)	15 (160)	12 (143)
2001	11 (83)	11 (83)	10 (78)
계	49 (336)	43 (311)	37 (284)

(2) 분야별 추진동향

(가) 언론·방송

1998년 중앙일보측은 협력사업과 관련된 세 차례의 방북 이외에도 사장단이 직접 북한측과 남북언론교류 및 문화교류를 논의하기 위하

여 방북한 바 있다. 다른 언론사들의 방북도 이어졌다. 한겨레신문은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의 윤이상음악회 참가와 언론사간 교류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방북했고, 경향신문사는 문화관광부와 함께 추진하는 '남북통합문화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실무협의 목적으로 역시 두 차례 방북하였다. 동아일보도 역시 두 차례 방북하여 백두산 등지를 취재하고 언론교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언론사의 방북시 환영해온 영상물의 방영과 기사의 게재, 사진작품의 전시, 방북기 출판 등도 방북과 함께 늘어났으나, 북한측이 공개하는 지역은 평양, 개성, 묘향산, 백두산, 금강산 등 일부 관광지로만 한정되어 있었고, 이들 지역에서의 환영 역시 북한측이 안내하고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이루어졌다. 방북자들이 전하는 바로는, 환영대상에 대한 북한측의 통제가 심했으며, 출국시 필름과 테잎 등에 대한 검열 또한 까다롭고 엄격했다고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언론·방송분야 교류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2000년 8월 국내 언론사 사장단 46명이 방북, 『남북언론기관들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였다. KBS는 한가위를 맞아 백두산-서울-한라산을 연결하는 생방송을 진행하였고, 이어 SBS는 평양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금년에는 MBC 여기자 2명이 북한의 풍물을 취재·보도하였고, KBS는 장기간 동안 체류하며 자연·문화·생활분야를 취재하고 특집물을 다량으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최근 언론·방송분야 교류는 이산가족, 장관급회담, 남북공동행사 등에 대규모 취재단 동행이 관행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 출판

1992년 여강출판사의 「리조실록」 출판계약은 북한측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정 논란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주민의 저작권도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 판시된 바 있다. 그 후에도 비교적 이념성이 적고 전문성이 있는 북한서적을 비공식 경로로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어졌고, 상당한 수량의 서적들이 이미 출판된 바 있다.

1998년에서 1999년에 걸쳐 누리미디어에서는 중국을 통해 「고려사」 「관마대장경」 「발해사인구」 「동국이상국집」 등 고문헌의 북한 번역본을 들여와 CD롬으로 출간, 대학도서관 등에 공급해왔다. 원간 「말」 지는 처음에는 고리의학·동의학과 관련한 북한서적을 재편집하여 출판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도서출판 삼성당에서는 북한의 민속자료 등에 대한 출판을 계획하고 있다.

북한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관심을 두게 된 것도 최근의 경향이다. 예로써 새한정보시스템은 바둑프로그램 「은빈」에 대하여 조선컴퓨터센터(KCC)로부터 판권을 넘겨받은 일본의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수입추진을 받아 이 프로그램을 출시한 바 있다.

출판 분야에서는 북한과의 직계약이 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측에서는 판권의 소재를 명확히 밝혀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판 계약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는 거의 모든 북한내 출판물의 대외 판권을 지니고 있다고 추정되는 기관이다. 북한은 2001년 4월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향후 남북한 출판물교류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나. 교류방향

남북한 언론·출판교류는 남북 상호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도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 교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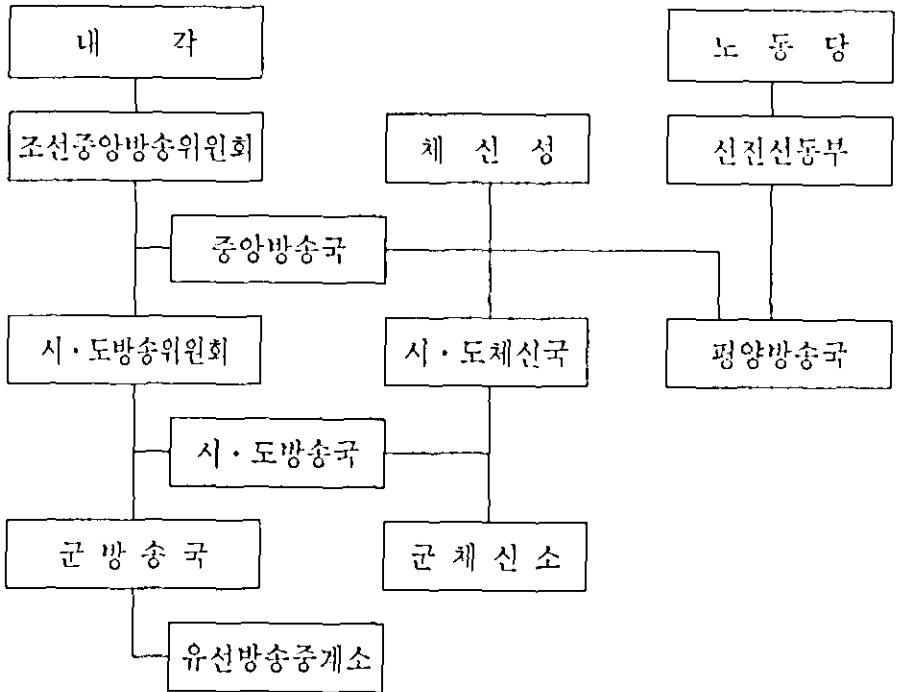
남북언론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언론이 공정성과 객관적인 시각을 잃을 경우 관계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이한 체제하에서 오는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역기능을 고려, 지나친 상업성에 기인하는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는 자세도 요구된다.

이 분야 교류는 상호신뢰를 쌓아가는 바탕 위에서 쌍방이 수용가능한 교류협력방안을 발굴해내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순차적 접근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정치적인 문화유산, 자연경관 등에 대한 방북촬영부터 시작한 것이 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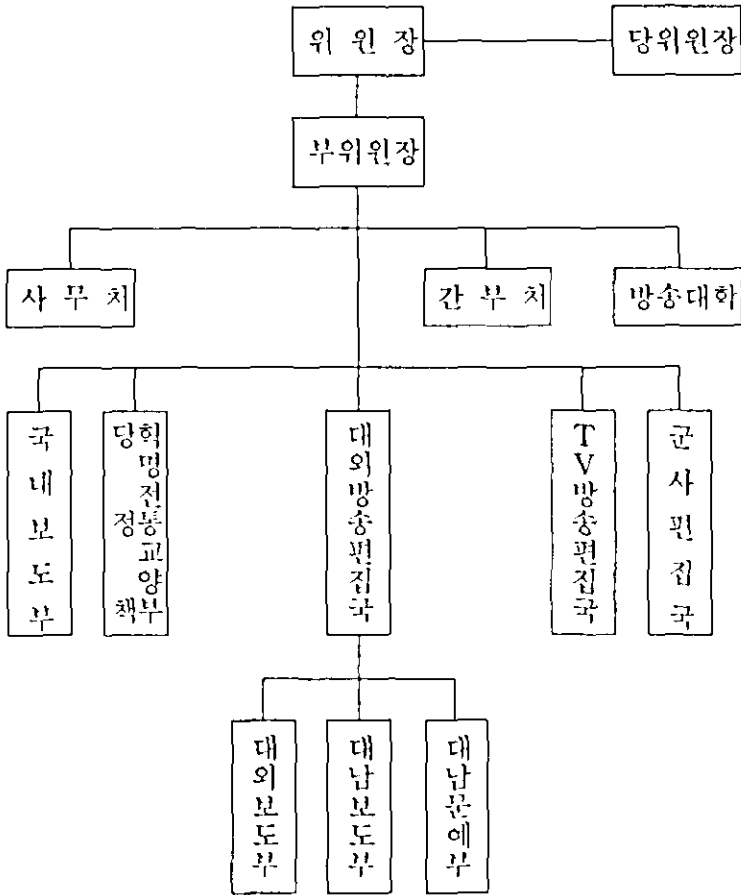
출판분야에서는 상호 출판물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북한측의 정당한 권리자를 규명하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남북출판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남북간 쌍무협정 등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북한 언론·출판계 현황

북한 방송체계



조선중앙방송위원회



• 출처 : 2000북한개요(통일부, 1999)

주요 언론기관

<라디오 방송>

방 송 국 명	방송방식	방송시간	비 고
조 선 중 앙 방 송	300kW 중파, 단파	22시간	대대방송
평 양 방 송	500kW 중파, 단파	23시간30분	대대 및 대남방송
평 양 FM 방 송		8시간	대남방송
구 국 의 소 라 방 송	중파, 단파	13시간	대남(흑색)방송

<텔레비전 방송>

방 송 국 명	방송방식	방송시간	비 고
조 선 중 앙 TV	PAL	평일 15~22시 수·일요일 9~12시	대대방송
개 성 TV 방 송	NTSC	월요일방송인함 하루4시간	대남방송
만 수 대 TV 방 송	PAL	토·일요일만 방송	지역방송

<신 문>

신문명	발행기관	성격	참간	발행내역
로동신문	노동당	노동당 기관지	1946. 1	150만부, 6면 발행, 일간
민주조선	정무원	정무원 기관지	1946. 6	30만부, 4면 발행, 일간
평양신문	평양시인민위원회	평양시인민위원회 기관지	1957	5만부, 4면발행, 일간
로동청년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근로자 대상 선전 교양지	1946. 4.20	6만부, 4면발행, 일간
새날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청소년·학생 대상 선전 교양지	1971. 4. 1	주2회 타블로이드, 4면
통일신보	통일신보사	무소속 대만지	1972. 8. 4	30만부, 4면, 주간
로동자신문	직맹	근로자·노동자 대상 선전 교양지	1946. 2. 9	2~3만부
농업근로자	농근맹	농민 대상 선전 교양지		주2회, 4면

• 출처 : 북한방문안내(통일원, 1993)

언론·출판 기관인명

기 관	책 임 자	기 관	책 임 자
조선로동당출판사	양경복	조선문예사	최한주
외국문중합출판사	황순명	금성청년종합출판사	한중섭
경선출판사	리창규	경제출판사	리수철
공업종합출판사	리능선	교육도서출판사	김창선
근로단체출판사	박세혁	농업출판사	허경관
조선미술출판사	미상	도서번역출판사	김리희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정시준	사회과학출판사	미상
리성출판사	정명희	예술교육출판사	미상
외국문도서출판사	송기현	평양출판사	리영일
조선사회민주당출판사	김석준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림광신
창도출판사	김경수	청년동맹출판사	우중학
조선중앙통신사	김기용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차승수
로동신문사	최길남	민주조선사	김정숙
교원신문사	리용천	로동자신문사	한영권
로동청년사	리종기	중앙과학기술통보사	리성선
동원신문사	로남국		

• 출처: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중일부, 2000)

6. 관광분야

가. 추진실태

남북간의 관광교류는 1982년 2월 정부가 20개 시범사업의 하나로 설악산과 금강산을 자유관광지역으로 개발할 것을 북한에 제의하면서 가능성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1989년 1월 현대그룹과 북한측은 금강산 공동개발에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고, 그 후로도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업자 등이 남북관광교류를 협의하기 위해 대북접촉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1989년 이후 2001년 8월까지 관광분야 북한주민접촉신청은 총 180건으로 이 중 172건이 승인되었으며, 51건이 성사되었다.

관광분야 북한주민접촉 현황

1989.6.12~2001.8.31, 건(명)

연 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1990	3 (3)	3 (3)	
1991	29 (69)	25 (38)	9 (21)
1992	17 (78)	16 (85)	7 (43)
1993	22 (91)	21 (90)	2 (5)
1994	29 (77)	29 (77)	8 (10)
1995	14 (58)	11 (51)	2 (5)
1996	15 (44)	16 (48)	2 (6)
1997	11 (20)	11 (20)	4 (3)
1998	15 (43)	15 (43)	7 (23)
1999	11 (41)	11 (41)	6 (29)
2000	7 (28)	7 (28)	2 (7)
2001	7 (45)	7 (45)	2 (19)
계	180 (597)	172 (569)	51 (171)

나.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

(1) 추진경과

금강산 관광산업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고향인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여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의지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1998년 9월 7일 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 출항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금강산 관광산업은 시작 당시 북한의 금창리 해외호텔 시설,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당시 우리 경제가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면서도 사업주체인 현대의 자금난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관광사업 자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현대와 북한 아태간에 2001년 6월 8일 관광대가 조정 문제, 육로관광을 위해 휴진선을 통과하는 국도 7호선을 연결하는 문제, 금강산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문제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반판이 마련되었다.

< 6.8 합의 주요 내용 >

- ▷ 금강산관광사업이 완성화될 때까지 관광객수에 따른 지불을 포함하여 현대의 능력에 맞게 합리적으로 대가를 지불함.
- ▷ 남측의 송천리와 북측의 고성을 연결하는 육로관광을 양측 당국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올해 7월중 당국간 협상이 진행되어 조속한 공사 착공일정이 합의되도록 양측 당국에 건의함.
- ▷ 금강산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한 법을 최대한(가능한 한 2개월)내에 제정, 공포 되도록 함.

또한 현대측은 기존의 금강호, 풍악호, 봉래호의 운항을 중지하고, 폐속선인 선봉호만 운항하고 있으며, 금강산관광사업은 현대아산으로 일원화하는 등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금강산 관광객 현황

1998.11.18~2001.8.31

인 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계
인원	10,554명	148,074명	213,009명	45,459명	417,096명
항차수	23회	255회	361회	138회	777회
항차당 평균인원	459명	581명	590명	329명	537명

(2) 금강산관광객 신변안전대책

남북간 관광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관광객 등에 대한 신변안전은 「통행협정」 등 남북한 당국간 합의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당국간 대화를 회피하는 북측의 태도를 감안하여 금강산관광의 예에서처럼 우선 사업자간의 합의를 통해 보장하고 남북한 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신변안전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9년 6월 20일 북측이 우리 관광객의 발언을 문제삼아 관광객을 억류하는 사건이 있었다. 정부는 관광객 억류조치가 합의사항 위반임을 강력히 항의하고, 금

강산관광을 중단시킨 가운데 사업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신변안전보장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북측이 '일방적인 조치'로 우리 인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수 없도록 하는 보장장치를 갖추도록 한 것이다.

현대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1999년 6월말부터 한 달간에 걸친 협상 끝에 1999년 7월 30일자로 「금강산 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관광세칙」)와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주요 합의내용

□ 관광세칙

- 관광세칙은 지참금지 물품, 관광시 준수사항, 위반시 제재내용, 확인서 양식 등으로 구성
 - 지참금지 물품 : 인화물전, 고배율 카메라, 무전기 등
 - 관광시 준수사항 : 관광시설 훼손, 오물 투기, 동식물 채취 등 금지
 - 위반시 제재내용 :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 위반사례별로 「환경보전비」(위반금) 금액 규정
- 위반금 부과절차 규정
 - 북측의 환경보호순찰원은 구별되는 별도의 의복이나 표식 착용
 - 준수사항 위반시 관광객, 현대측 관계자의 사실확인 시명(확인서 교부)
 - 경미한 사항인 경우 경고 등으로 해결

□ 신변안전보장관련 "합의서"

- 현대·북측 각 3~4명으로 구성하는 「조정위원회」 구성
 - * 「조정위」에 변호사 참여 가능
- '문제발언'관광객은 추방(관광선으로 귀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강력한 형사사건 등 임종한 사건은 「조정위원회」에서 협의, 처리
- 「조정위원회」에서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협의, 처리

이로써 북측이 일방적 조치에 의해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간의 협상과는 별개로 1999년 7월 1일 북경 「남북차관급회담」에서 남북간 왕래인원의 신변안전보장 문제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신변안전보장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동 위원회의 구성은 북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으나, 정부는 향후 남북당국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에도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1999년 9월 21일 정부내 협의기구인 「북한방문자 신변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우리 방문자의 신변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려는 것이다.

정부는 관광도중 발생할지도 모르는 관광객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즉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의 관광분야가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 육로를 이용한 관광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 북한의 관광정책

북한은 1980년대부터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외화수입 증대수단의 하나로 관광사업에 관심을 보여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시설 확충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동 법에 관광사업을 포함시켰으며, 1986년에는 여행관리국을 국가관광총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1987년에는 9개 관광개방지역을 선포하여 외국관광객 유치에 주력하는 한편 세계관광기구(WTO)에 가입하였으며, 평양 상업대학에 관광학과 등을 신설하고 제3차7개년계획에 관광개발을 추가하였다. 1995년에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에 가입한데 이어 1996년에는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대한 관광규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관광정책은 주민의 휴식, 휴양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적 차원이 아닌 외화획득이라는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광사업은 내각 산하 ‘국가관광총국’이 지도관리하며 관광계획, 관광조사 및 개발, 관광신진 및 시장개척, 관광재정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다. 산하에는 조선국제여행사, 관광신진통보사 등을 두고 있다. 조선국제여행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계약과 판매, 관광안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의 북경과 단둥 등에 지사를 두고 있다.

현재 북한이 관광자원화하고 있는 곳은 평양과 그 주위의 성곽, 사찰, 동명왕릉, 단군릉 등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외국 관광객들에게 개방된 대표적 사찰은 묘향산의 보현사와 개성의 관음사 정도이며, 사직지의 경우에도 평양과 그 주변에 있는 유직과 개성의 왕릉, 성곽, 성군관, 고려 왕궁터 정도이다.

라. 북한의 관광상품*

해외시장에 대한 북한관광상품의 유통경로는 국가관광총국이 산하

* 한국관광공사, 「2000년대 통일대비 남북관광교류협력실무안내」(99.12) 참조

조직을 통하여 직접판매하는 경우와 합작·합병여행사의 설립을 통한 판매 및 해외여행사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북한관광상품의 직접판매는 국가관광총국의 주관하에 조선국제여행사, 조선국제청년여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중 조선국제여행사는 1사(아시아), 2사(미주), 3사(구미주)의 지역별 전담부서를 두어 지역별 상품개발, 시장개척, 선진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 조직은 영세한 조직과 예산, 관광부문의 경험부족 등으로 커다란 성과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합작·합영기업으로는 마카오 화재그룹과 조선국제여행사 간의 조·오국제여유공사, 중국 요령성 단동국제여행사와 평안북도 간의 조·중여유공사, 재미동포 단독출자의 합영회사인 금강산국제관광회사가 있다. 북한이 관광상품 판매를 의뢰한 여행사는 20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판매하고 있는 여행사는 일본, 홍콩, 호주, 태국, 대만,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등지의 친북여행사 중심의 30여개사에 불과하다.

(1) 일본지역

조선국제여행사가 일본지역의 전담판매업체로 지정한 여행사는 조총련계의 중외여행사 1개사 뿐이며 여타업체는 중외여행사의 위탁판매형식을 취해 모객을 하고 있다.

1997년 북한으로의 송객실적은 총 1,543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1998년 8월말까지의 이들 여행사에 의한 집계는 약 800명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방북 루트는 대부분이 나고야 공항을 이용한 전세기편 취항과 도쿄의 나리타 공항에서 취항하는 북경으로의 정기편을 이용한 방북 루트이다.

절대적인 여행경비 및 방문시간 절감이 어려워 타국의 기획상품들과의 경쟁은 힘들며, 현재의 여건이 계속되는 한 향후 판매신장률은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 금강산관광이 외국인에게 본격적으로 개방되고, 대규모 마케팅이 이루어질 경우 많은 일본인과 재일 동포가 한국의 관광지와의 연계한 금강산관광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내의 북한관광상품 현황

관광상품명	여행사	기간	가격	코스	
평양 4박 5일	도쿄 (中外旅行社)	4박 5일	¥225,000	금강산-평양-묘향산-개성-관문점	
교육차 5박 6일		5박 6일	¥251,000	평양-원산-금강산	
조·중 국경과 관문점 관광		8박 9일	¥259,000	북경-단둥-평양-묘향산-개성-관문점	
평양·개성 5일		4박 5일	¥238,000 -314,000	북경-평양-개성-관문점	
고구려 고분 4박 5일		5박 6일	¥274,000	평양-남포-개성	
평양 5박 6일		5박 6일	¥235,000	평양-금강산	
			¥242,000	묘향산-평양	
			¥259,000	평양-백두산	
조선 사이클 여행		일본 (조일기안회, 조일연구회)	6박 7일	¥293,000	북경-평양-관문점-개성
¥311,000 -364,000				북경-평양-관문점-대동강-묘향산	
북한 7일	6박 7일		¥313,000 -346,000	북경-평양-묘향산	
금강산 여행			¥284,000	북경-평양-원산-금강산	
조선 사이클 여행	5박 6일		¥308,000	평양-묘향산	
중국 국경과 관문점 여행	8박 9일		¥297,000 -304,000	북경-단둥-신의주-평양-개성-관문점-북경	
			¥581,000 -586,000	북경-평양-개성-관문점-북경-서울	
조선 사이클 여행	6박 7일		¥293,000	북경-평양-관문점-개성-북경	
북조선 여행	일본 (Travel 世界)		5박 6일	¥298,000	평양-개성-관문점-백두산-남포
				¥265,000	평양-개성-관문점-금강산-원산
		¥248,000		평양-개성-관문점-묘향산-단둥	

(2) 중국지역

중국에서의 북한관광은 초기에는 변경 관광(어권없이 가능한 해외관광)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북한 변경 관광 여행사는 단둥시의 국제여행사, 금방주여행사, 금순여행사와 일변의 도문시여행사, 집안현의 국제여행사, 장백현의 장백여행사 등이다.

송객 순위별로는 단둥 국제여행사, 단둥 금방주여행사, 단둥 금순여행사, 단둥 해외여행사, 일변 직공여행사, 집안 국제여행사 순이며, 최근 중국에서의 송객량은 약 6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방북상품 중에서는 인민폐 2,300원 진후의 저렴한 3박 4일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으며, 모객은 단둥시로 집권이 용이한 인근지역에서의 일반 관광객과 수학여행, 인센티브 여행, 단체관광자, 출장자들이 주 대상이다.

중국내의 북한관광상품

관광상품명	여행사	기 간	가 격	코 스
북한관광상품	북경(심양시 해외관광총 국)	3박 4일	인민폐 2,500원	평양-개성-묘향산
		4박 5일	인민폐 2,900원	평양-묘향산-개성-원산
		6박 7일	인민폐 3,300원	평양-개성-원산-금강산
		7박 8일	인민폐 3,700원	평양-묘향산-개성-원산-금강산
		9박 10일	인민폐 4,500원	평양-묘향산-개성-원산-금강산-남포
북한관광상품	북경(연변중 업원 국제 여행사)	3박 4일	인민폐 2,600원	평양-개성-묘향산
		6박 7일	인민폐 3,500원	평양-묘향산-금강산-개성-판문점
		8박 9일	인민폐 4,000원	평양-묘향산-개성-원산-금강산-남포

(3) 아시아 지역

대만, 홍콩, 태국 등지에서는 북한관광상품이 지속적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들 지역에서의 북한 관광 상품 판매는 전세기편을 주로 이용하여 왔으나, 1999년 9월부터 마카오-평양 간 고려항공의 정기편이 개설된 후 이를 연계하여 매주 2편이 취항중으로 이를 이용한 상품이 많이 개발될 전망이다.

태국의 경우 1997년 방콕-마카오-평양의 고려항공 노선을 통해 同 항공사 독점판매 계약의 Master Sky Tour가 연간 150명의 모객 실적을 올렸다.

홍콩지역은 1996년 8월부터 Golden Trip Travel Service Ltd.가 모객 책임 여행사로 북한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Hong Thai Citizen Travel 등의 위탁 판매 업체 등과 모객을 해오고 있다.

대만지역은 한국과의 국교 단절 이후 북한과의 경제분야에서 유착 관계가 진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북한으로의 관광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입국경로는 타이페이-마카오 간을 에바항공, 후상항공과 연계하여 마카오-평양간의 고려항공 정기편을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국제여행사 대만선전대행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여행업체는 6개의 지정여행업체를 포함하여 8개의 업체로 집계되었다.

중국내의 북한관광상품

관광상품명	여행사	기간	가격	코스
북한여행	홍콩 (Golden Trip Travel Service Ltd. Hong Thai Citizen)	4박 5일	HKD 5,799	마키오-평양-묘향산-개성-핀문점
		7박 8일	HKD 7,590	마키오-평양-묘향산-개성-핀문점 -원산-금강산
북한 5일	타이페이	4박 5일	NTD 49,900	타이페이-평양-묘향산-개성-핀문점
북한일주 8일		7박 8일	NTD 37,900	타이페이-평양-묘향산-개성-원산 -금강산
북한명산 8일		7박 8일	NTD 43,900	백두산-금강산-묘향산
불리디보스톡, 평양 8일		7박 8일	NTD 49,900	타이페이-불리디보스톡-평양
북한, 동북3성 12일		11박12일	NTD 49,900	타이페이-평양-묘향산-개성-심양
Visit the D. P. R. K	방콕(Master Sky Tour)	3박 4일	Baht 25,700	방콕-평양-개성-핀문점
		4박 5일	Baht 27,500	방콕-평양-묘향산-평양-개성

(4) 미주 · 유럽 지역

미국과 북한 간에는 국교가 미수립된 상태여서 양국간의 본격적인 관광교류는 전무한 실정으로, 방북을 원하는 미국인들은 여권을 소지하고 제3국의 북한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내 북한 상품 취급여행사는 주로 나진-선봉 투자설명, 현지시찰 등 투자방문단 모객 형태로 상용관광측면에서의 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실적은 미미하다.

미국내 재미동포의 북한여행과 관련된 실질적 업무는 '재미경제인 협회'에서 주관하며, 방북희망자는 同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연회비

500달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북상품 취급업체로는 뉴욕 소재 제일관광여행사 및 로스엔젤레스의 전금여행사와 시티여행사가 있다.

유럽지역에서의 북한상품판매는 극히 저조한 상황이며 독일과 영국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었다. 영국에서는 유일한 북한상품 취급대행사인 Regent Holidays가 판매활동을 벌여왔으나 1998년 이후부터 중단되었으며, 독일에서는 'Lenmidee Reisen'과 'East Asia Tours'가 판매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7.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자) 승인단체 현황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업내용(지역)	금액	사업시행연월 (사업승인연)
▲대한남녀학회	북한남녀 학회	제4회세계청소년대회 (’91.4.24~5.6) 남북(연방) 구성·평가 (연방)	7억 9천만원 (남북협력기금)	’91. 3.21 (’91. 3.21)
▲대한올림픽위원회	북한올림픽 위원회	제6회세계청소년축구 선수권대회(’91.5.27~6.4) 남북(연방) 구성·평가 (북남동경)	1억 6천만원 (남북협력기금)	’91. 5. 1 (’91. 5. 1)
▲동원문화연구소	조선아시아 태평양문화 위원회· 조선중앙 역사박물관	북한문화유적 탐사·조사 (북한지역 역사유적지)	6만불	’97.12.10 (’97.12.10)
▲연변과과대수 원회· 동북아교육 문화협력센터 (’99.6.29)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 남조선문 서행경경제 위원회	타진·선문대 과과대 상인·운영 (타진·선문)	500만불	’98. 4. 9 (’98. 6. 5)
문화방송	금강산국제리 라디오사	북한의 차민검관 및 방송교적 TV 프로그램 촬영 (평양, 개성, 백두산, 금강산 등)	60만불	’98. 3.13
▲한민속문화재 단(한민)	라진경제 연구소사	제양공장 탐사 및 명원운영 (타진·선문)	240만불	’98. 4. 8 (’98. 6. 5)
▲수문스아	조선아시아 태평양문화 위원회	북한의 역사유물 및 공물기행 관련 방송영상물 제작 (평양,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60만불	’98. 4. 29 (’98. 4.29)
▲한국사학회	조선사건기동 방송위원회	남북사건기록(시음, 필연) 및 시진첩 출판(2,000부)	1억8천만원	’98. 4.29 (’98. 4.29)
▲한민체육대회 위원회 연구소(한민)	금강산 국제극동 (화강·백령)	남북 문화정보화사업	3억5천만원	’98. 5. 11 (’98. 6.20)
북인방커뮤니 케이션	조선해외동포 원호위원회	북한 명산·역사적 유산지 탐방관련 다큐멘터리 및 방송광고 제작	미 정	’98. 8. 6
▲우인방 커뮤니케이션/ 한국자문·재건수 협회	조선아시아 태평양문화 위원회	동원연원 금강산 국제해리	100만불	’99. 2. 9 (’99.11.11)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금 액	사업시승인일 (사업승인일)
▲(주)CNA 코리아	조선이세이 대평양평화 위원회	'99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양·서울공연	100만불	'99. 3.25 ('99. 4.16)
MBC 프로덕션	조선이세이 대평양평화 위원회	CD 남북공동 제작, 유적비디오 제작 등	68만불	'99. 5. 12
국립공원 관리공단	산림과학원 (국도환경 보호성 산하)	남북간 국립공원 교류협력사업 추진사업	미 정	'99. 7. 21
▲ SN 21 엔터프라이즈	조선이세이 대평양평화 위원회	민족통일음악회 방북공연	60만불	'99. 8. 5 ('99. 8. 5)
▲(주)현대 이산· 현대건설 (2000.3.8) 현대자동차등 13개사(추가) (2000.7.4)	조선이세이 대평양평화 위원회	신해중합체육관 건설 및 남북 체육 교류사업	3,420만불 (남북한 총투자액 : 5,750만불)	'99. 9. 2 ('99.9.20 → '00. 3. 8 변경승인, '00. 7. 4 변경승인)
▲(주)계명 프로덕션	조선예술 교류협회	평양교예단 한국방문 공연	50만불	'99. 9. 22 ('99. 9.22)
▲(주)테오미전	조선백호7 무역회사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50만불	2000. 2. 3 ('00. 2. 3)
평화의 숲	조선이세이 대평양평화 위원회	산림조성 및 보호를 위한 종자· 요육·장비 지원	4억원	2000. 4.12
▲기독교대한 감리회 사모연회	조선기독교도 연맹	평양신학원 재개원 및 운영 지원	60만불	2000.5.20 (2001. 1.12)
▲ NS21	조선이세이 대평양평화 위원회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550만불	2000. 5.23 ('00. 5.23)
▲한민족문화 네트워크연구 소(단독)	조선이세이 대평양평화 위원회	북한 문화자료 정보화사업	50만불	(2000. 7.14)
NS21	조선이세이 대평양평화 위원회	남북한합작영화 「아리랑」 제작	100만불	2000.10.14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금 액	사업제승인일 (사업승인일)
(주)이미	범태평양조선 민족경제개발 추진협회	남북공동애니메이션 제작	미 정	2000. 11.29
▲한국문화재단	금강산가극단	금강산 가극단 한국발동 공연	1천만원	2000.11.29 (2000.11.29)
▲(사)조선문화선양회	조선아시아태 평양평화위원회	「조선전」 남북합동공연	60만불	2001. 1.12 (2001.1.12)
▲(주)하나로 통신	삼천리통신사	3D 단편 애니메이션 남북공동제작	19만불	2001. 3.23 (2001. 3.23)
▲(사)동북아 교육문화협력 재단	교육선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	400억원	2001. 6.5 (2001. 6.5)
▲남북교육문화교류연구소 (동해대학교)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남북공동서진전 「백두에서 한라 까지	9만불	2001. 6.7 (2001 .6.7)

주)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단체임

• 2001. 8월까지 총 29개 사업 승인 ; 이중 「협력사업」까지 승인된 사업은 22건임.

부 록

북한주민전체 및 북한방문 관련 양식

남북협력사업 관련 양식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남북교류협력 관련 남북간 합의문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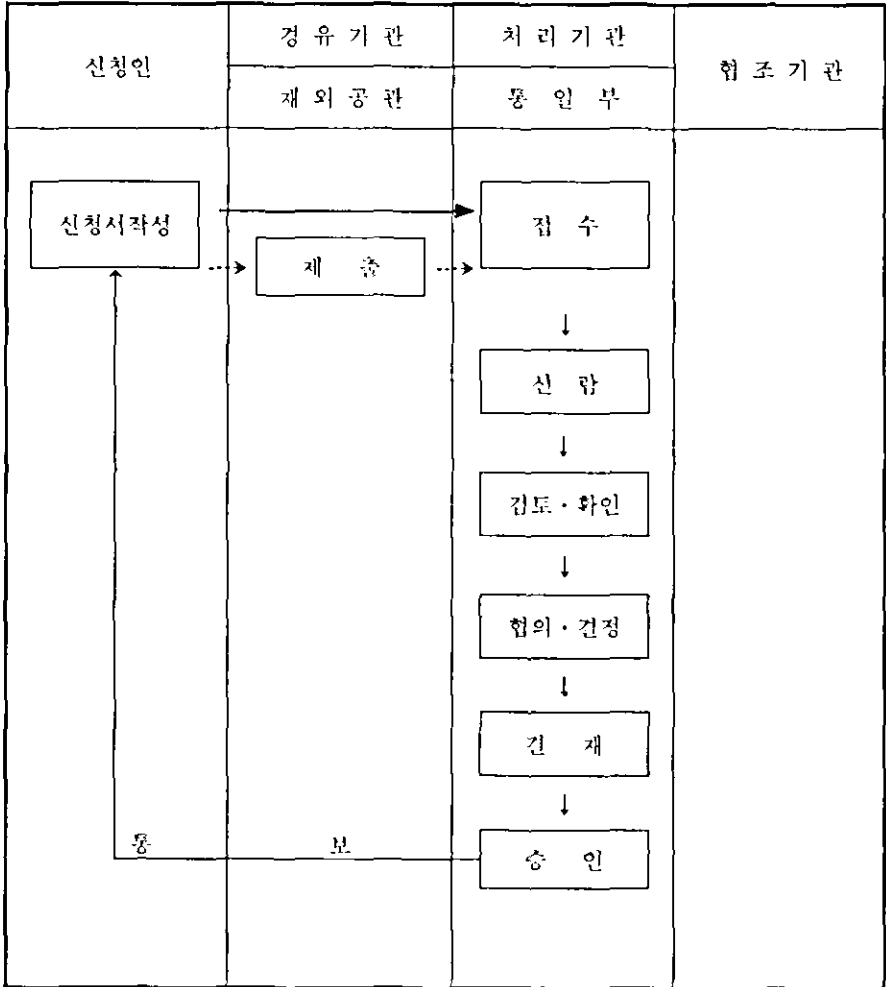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 관련 양식

- 북한주민접촉신청서
-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 북한방문증명서
 - 북한방문신고서

(뒷면)

-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2.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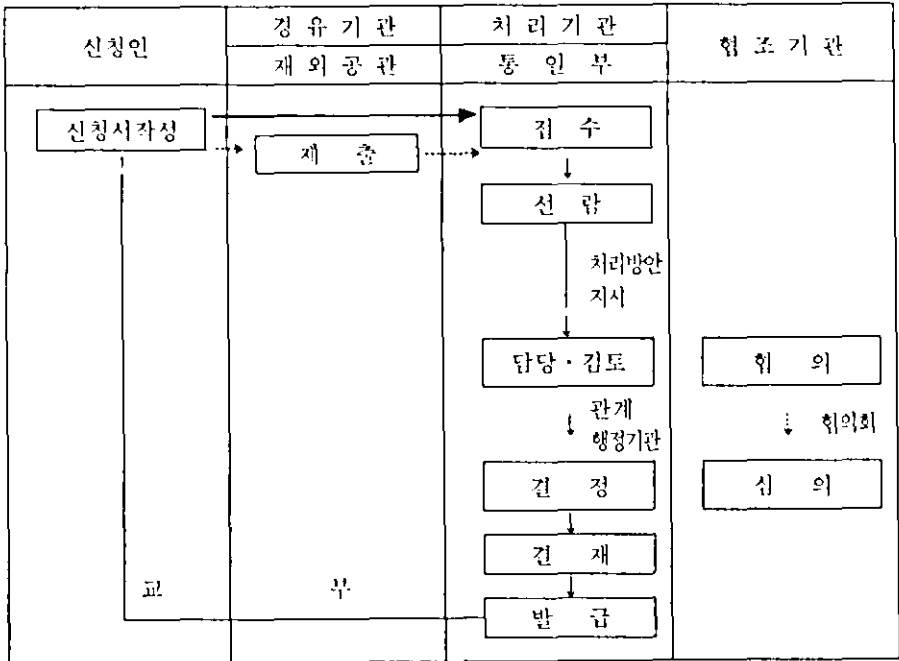
2.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포함)

3. 병역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해당자에 한함)

4.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남북협력사업 관련 양식

-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
 - 협력사업자 승인증
- 협력사업자변경 승인신청서
 - 협력사업 승인신청서
- 협력사업 변경 승인신청서
 - 협력사업 보고서

< 앞 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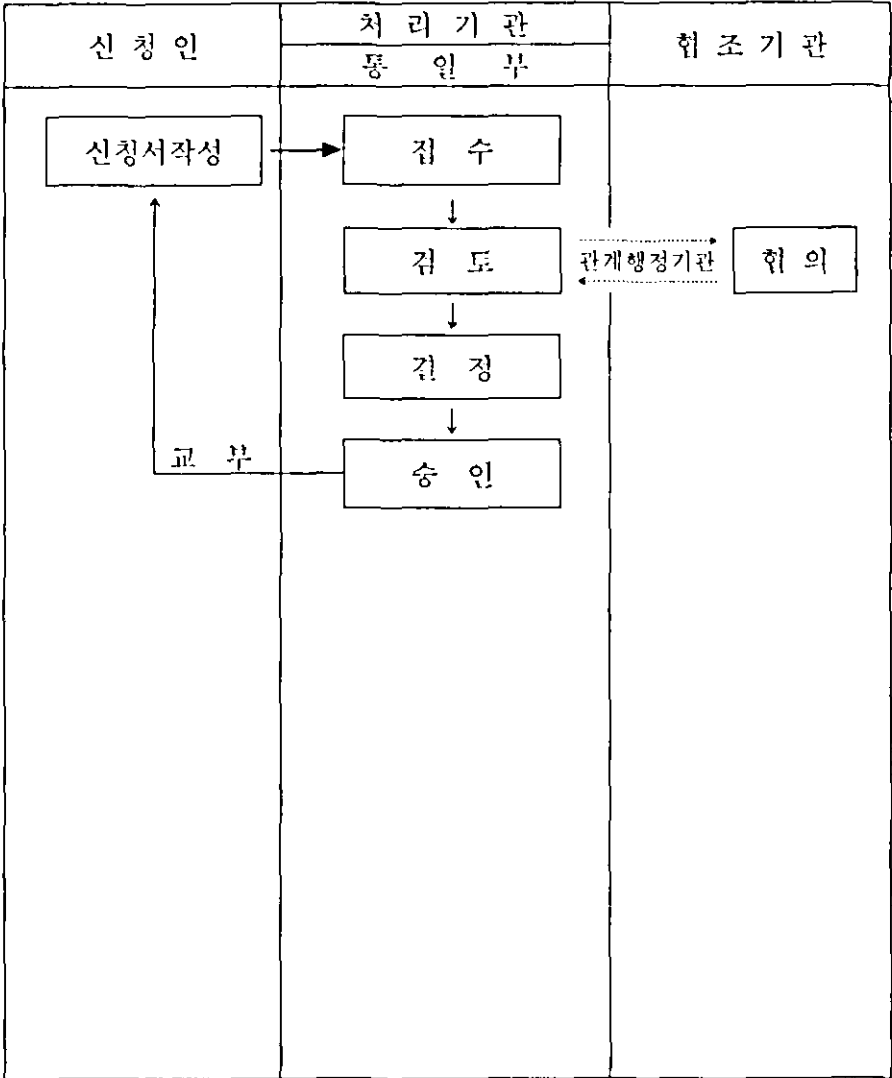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 상호(법인명)		② 업 종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업종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하며, 추후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 법령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동인부장관 귀하</p>			
<p>구비서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력사업의 개요 설명서(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수행 방식, 사업상대방, 진출지역, 생산품목·능력, 예상 투자규모·비율, 자금조달 방법, 제품판매 계획, 기타 사업의 주요내용 포함) 1부 2. 의향서 사본 1부 3. 영 제30조제2호의 "사업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 1부(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타자본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6.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신원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승인번호 제 호

협력사업자승인증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구분
주 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협력사업자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일부장관(인)

210mm×297mm(인쇄용지(목규) 70g/m²)

협력사업승인신청서

< 앞 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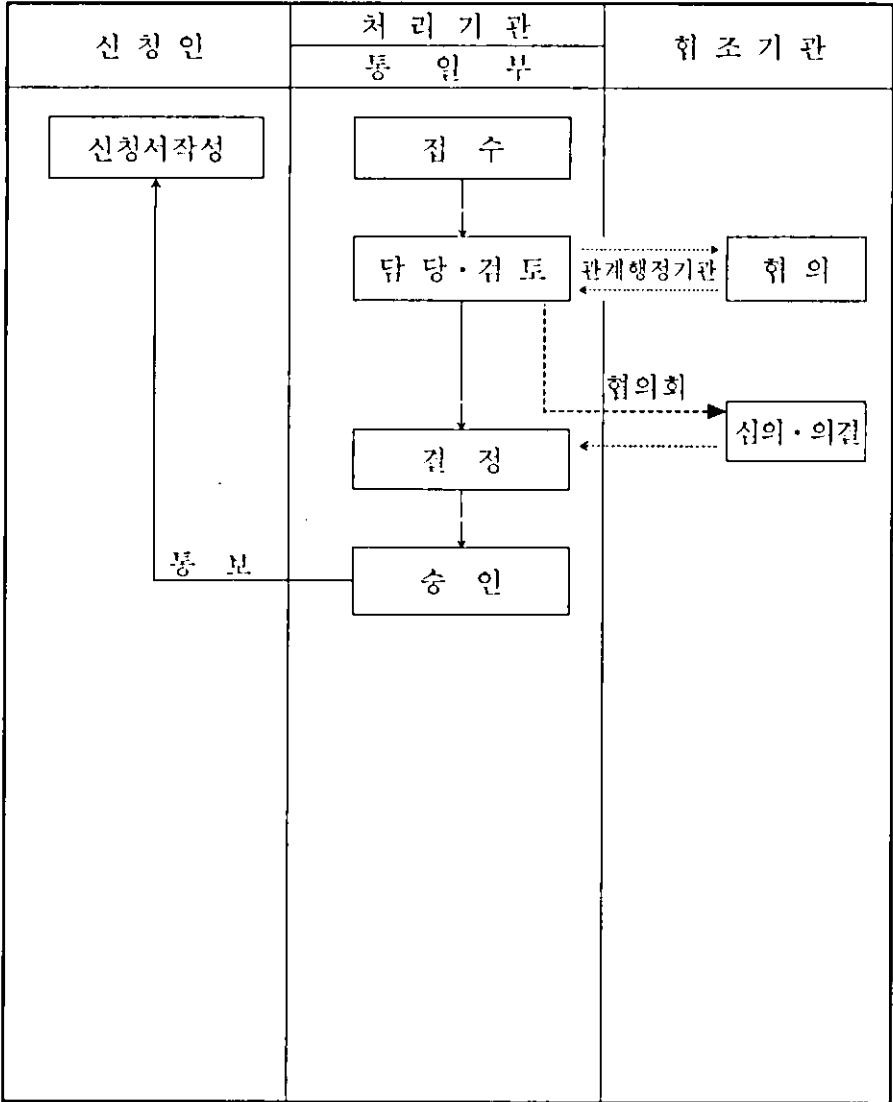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협력사업자 승인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상대자	⑦ 상 호 (법 인 명)		⑧ 소 속	
	⑨ 주 소		⑩ 전 화 번 호	
	⑪ 대표자성명		⑫ 생년월일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목적			
	○ 사업장소			
	○ 사업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 청 인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p>구비서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1부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1부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1부 4. 북한당국의 확인서 1부 5.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 조사 결과 1부 6. 단독투자의 경우 북한당국에 제출한 외국인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창설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각 1부</p>				<p>수수료</p> <p>없 음</p>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단 체 명 (법 인 명)		② 변 경 진 승인 번호
	③ 주 소		④ 진 화 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사업	⑦ 사 업 명		
	⑧ 승 인 일 지		
⑨ 변 경 내 용 개 요			
변 경 전		변 경 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남북협력사업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p>구비서류 : 1. 협력사업자승인증 2. 당초시행중인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된 사업의 추진계획서 1부 4. 변경사유서 1부 5. 협력사업상대자 변경시에는 영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류 각 1부</p>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m²)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 금강산관광객등의북한방문절차에 대한 특례
 - 북한지역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 남북협력기금법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제 정 1990· 8· 1 법률제4239호
개 정 1990· 12· 17 법률제4268호(정부조직법)
1992· 12· 8 법률제4522호(출입국관리법)
1994· 12· 31 법률제4850호(대외무역법)
1994· 12· 31 법률제5211호(대외무역법)
1997· 12· 13 법률제5454호(정부명칭등의변경에
따른건축법 등의정비에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추진회의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남북교류협력추진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0·12·27>

제5조(협의회의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원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90·12·27>

③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원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0·12·27>

제6조(협의회의의 기능) 협의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 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의사)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에 상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남·북한 왕래)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②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2·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

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개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원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4·12·31, 96·12·30>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원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96·12·30>

1.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통일원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

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②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제16조(협력사업자)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②통일원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2·12·8>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등) ①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요청) 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3>

③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97·12·13>

1. 외국환관리법
2.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동환금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29조(형의 감경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 칙 생략>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제13209호(통일완과그소속기관직제)
	1991· 12· 31	대통령령제13558호(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 3· 30	대통령령제13872호(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제14078호(교통세법시행령)
	1994· 12· 23	대통령령제141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 12· 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5· 12· 6	대통령령제14819호(병역법시행령)
	1996· 5· 31	대통령령제15006호(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96· 8· 8	대통령령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 12· 15	대통령령제15530호(우편법시행령)
	1998· 10· 23	대통령령제15920호
	1998· 12· 31	대통령령제1598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장소) ①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91·2·1, 93·3·30>

1. 판문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3. 개항전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

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1·12·23, 96·8·8, 98·12·31>

제 2 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3조(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회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건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수당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91·2·1>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징직·변정직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준용규정등) ①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남북한 왕래등

제9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눈다.

②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개정 91·2·1>

③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민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방문증명서 : 갈색·4민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4민

④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2·1>

1. 증명서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장
8.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왕래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3년의 유효기간 범위안에서 횡수의 제한없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의 편수는 10면으로 한다. <신선 98·12·31>

제10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5·12·6>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4매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95·12·6, 98·12·31>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

③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2·1>

④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1·2·1>

제11조(대리신청) ① 대리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나. 초청장 사본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12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8·12·31>

제13조(편의제공) 통일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내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91·2·1>

제14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은 이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8·12·31>

제15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16조(방문기간) ①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1년 6월이내의 방문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은 당해 방문증명서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증명서의 반납등) ①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자가 귀환할 때에는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 증명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③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1·2·1, 98·12·31>

제18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까지 또는 귀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삭제 <98·12·31>

제19조(집족승인신청)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족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집족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집족으로 한다. <개정 91·2·1>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집족 1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8·12·31>

1. 북한주민집족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집족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후 7일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91·2·1>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 <개정 98·12·31>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등 사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20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1·2·1, 98·12·31>

제21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91·

2·1>

제22조(출입심사) ①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91·2·1>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의 확인 <신설 98·12·31>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등은 통일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개정 91·2·1>

③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심사업무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98·12·31>

제23조(심사확인) ①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자로 확인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개정 98·12·31>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1·2·1>

제 4 장 교 역

제25조 삭제 <98·12·31>

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인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1·2·1>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1·2·1>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⑤법 제1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98·12·31>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퍼센트이내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제27조 삭제 <98·12·31>

제28조 삭제 <98·12·31>

제29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의견을 기처야 한다. <개정 91·2·1, 93·3·6, 98·12·31>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1·2·1, 93·3·6, 98·12·31>

③삭제 <98·12·31>

제 5 장 협 력 사 업

제30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91·2·1>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 등을 갖추고 있을 것 <개정 98·12·31>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제31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2·1>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개정 91·2·1>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2·1>

제32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1·2·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취소절차)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 당국의 확인서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1·2·1>

제35조(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된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 ①통일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8·12·31>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③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1·2·1>

제36조의 2(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신설 98·12·31>

제37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1·2·1>

제38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2·1>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③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2·1>

제39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12·31>

제 6 장 보 칙

제40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5·31>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4.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41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1·2·1, 94·12·23, 98·12·31>

제42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제43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직합할 것

제44조(협의등) ①통일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1·2·1>

②삭제 <98·12·31>

제45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운행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91·2·1>

제46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

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우편사업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는자로 한다. 다만, 남북한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1·12·31, 98·12·31>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3. 전기통신 <개정 98·21·31>

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 요금에 의한다. <개정 91·12·31>

제48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1·12·31, 97·12·15, 98·12·31>

제49조(수당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

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1·2·1>

③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제기본법
3. 국제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삭제 <98·12·31>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등”으로 본다.

⑤관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직재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신설 98·12·31>

⑥이 영에 정한 사항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기치 고시한다.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93·12·31>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3·12·31, 98·10·23, 98·12·31>

제52조(휴대품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3·12·31>

②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①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の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생략>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저리에관한규정

제 정 1997· 6·27 통일원고시 제97-2호

개 정 1998· 5·12 통일부고시 제98-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조사·연구·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
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
3.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

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력사업자 승인신청 구비서류) ①영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신청서
2. 협력사업 개요 설명서
3. 협력사업 상대자의 의향서 사본
4. 최근 3년이내의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②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불필요하거나 새로 추가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자 승인 신청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추가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협력사업자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협력사업자의 방북)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또는 협력사업의 시행에 관련되는 자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6월의 기간내에서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영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협력사업자는 증명서 발급 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3. 향후 1년6월간의 방북예정서

③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는 방북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방북 7일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 사본 또는 초청장 원본
- ④통일부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수시 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승인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력사업 승인신청 구비서류) ①영제3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2. 영화, 공연물, 출판물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제작승낙서
3. 제10조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을 동시에 신청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사업의 승인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요청하는 때에는 협력사업 승인신청자에게 그에 관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의 기재방법 등) ①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에서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추진경위
 - 나. 주요내용
 - 다. 세부 추진계획
 - 라.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마. 기대효과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협력사업 상대자의 경력 (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는 협력사업의 상대자와 최종 합의 된 것으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력사업의 명칭
 - 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명칭·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다. 협력사업의 목적·기간·방법, 협력사업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력사업 당사자간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
 - 라. 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
 - 마. 공동저작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행사·양도 등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하여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항

나. 협력사업에 참여한 자의 신변보장 및 협력사업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②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처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자 승인 및 협력사업 승인의 신청과 그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1. 남북한 당국의 합의를 기초로하여 이루어지는 협력사업
2. 긴급을 요하는 협력사업
3. 기타 통일부장관이 동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사업

부 칙<98·5·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산관광객등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

제정 1998· 11· 16 통일부고시 제98-3호

개정 1999· 8· 18 통일부고시 제99-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산단체관광객 등에 대한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금강산 단체관광객, 금강산 관광선의 승무원 및 금강산 관광안내원중 남한주민 또는 재외국민인 자(이하 각각 "단체관광객", "승무원", "안내원"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단체관광객의 북한방문절차

제3조(신청서류) ①단체관광객은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와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발급 및 금강산 관광신청서로 한다.<개정 '99· 8· 18 >

③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는 사업자를 통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증명서발급협의)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협의를 위

하여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명단을 국가안전기획부에 통보한다.

제5조 삭제<'99.8.18>

제6조(증명서의 소지) 통일부장관은 단체관광객에 대해 대표자를 지정하여 북한방문 승인 공문을 소지하게 하고, 이를 단체관광객이 공동소지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외국민에 대한 증명서발급) 제외국민이 국내에서 금강산 관광을 하고자 할 때에도 제3조 내지 제6조의 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적용한다.

제3장 승무원 및 안내원의 북한방문절차

제8조(승무원 및 안내원에 대한 증명서발급) 통일부장관은 승무원 및 안내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승무원 및 안내원의 북한방문 신고) 통일부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승무원 및 안내원이 승인받은 방문기간 중에 북한을 방문할 때에는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7조가 정하는 북한방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및 별지 생략>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제 경 1998·11·14 제정경제부고시 제1998-4호

1. 적용범위

외국환관리규정 제18-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방문 승인을 받은 자(이하 “관광객”이라 한다)의 환전 등에 관하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여행경비

가. 여행경비 지급한도

관광객은 매회 관광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광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기본경비 : 미화 1,000불 상당 이내
- 2) 기타경비 : 국내에서 북한지역 관광사업자(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지역 관광사업관련 남북협력사업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북한에 지급하는 경비

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관광객은 북한에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관광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관광선내의 환전상 설치 인가

외국환관리규정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사업자가 관광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북한지역 관광을 위해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환전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관광객에 대한 환전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제3호에 의한 환전상이 관광객에 대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가 발행한 「북한지역관광경비지급 영수증」 원본에 “환전필” 날인을 하고 환전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5. 관광사업자의 관광비용 지급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관광비용을 북한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지역 관광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지급신고를 한 후 송금하거나 휴대수출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관광객은 관광선에서 북한으로의 왕래시 제2호 가. 1)의 기본경비(대외지급수단에 한한다)를 제외하고는 지급수단(내국지급수단을 포함한다), 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7. 기 타

기타 관광사업자의 경비지급 등 북한지역관광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생략>

남북협력기금법

- 개 정 1990 · 8 · 1 법률 제4240호
- 개 정 1990 · 12 · 27 법률 제4368호(정부조직법)
- 1993 · 12 · 31 법률 제4675호(국채법)
- 1996 · 12 · 12 법률 제5170호(재정용자립면회계법)
- 1997 · 12 · 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관한법률)
- 1999 · 5 · 24 법률 제5892호(정부조직법)
- 1999 · 12 · 31 법률 제6075호(국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3·12·31>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의 예수금 <개정 99·12·31>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5조(장기차입)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용자특별회계,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6·12·12>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97·12·13>

제6조 삭제 <93·12·31>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90·12·27, 99·5·24>

②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③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97·12·13, 99·5·24>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0·12·27>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

한다. <개정 93·12·31>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개정 90·12·31>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90·12·27>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90·12·27>

③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일시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환수)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6·12·12>

1. 국채·공채의 매입
2. 재정융자특별회계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13조(이익 및 길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부 칙 생략>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정 1990·12·31 대통령령제13237호

개 정 1991·2·1 대통령령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3·3·6 대통령령제13869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9·5·24 대통령령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3조(채권의 발행)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4·12·23>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개회

5. 발행조건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발생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채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91·12·23>

③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4조(채권사무의 취급)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1·2·1, 91·12·23>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1·2·1>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2·1>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읍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1·2·1, 93·3·6, 91·12·23>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문화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 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개정 99·5·24>

③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이급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2·1>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2·1>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 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지원의 방법) ①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 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1·12·23>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1·2·1>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결산보고서) ①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1·12·23>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기금의 계리)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 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2·1>

<부 칙 생략>

남북교류협력 관련 남북간 합의 문건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남북공동선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 북 화 해

-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

까지 한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인력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선을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안에 본회담 태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경제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 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31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 대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 ④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⑩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종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

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선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⑤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⑦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⑧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

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선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②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⑤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

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2 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인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총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대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 ①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 ②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공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 ③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 ④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⑤남과 북은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 ⑥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⑦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 ⑧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이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분의 이해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3 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단체들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분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 4 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 대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인 형 목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 ②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 사항을 협의·실천한다.
- ④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③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⑥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⑦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

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회의체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인 형 목

남북공동선언(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조	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김	대		중	김	정									일

남북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추진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다음 연락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 전화 :

-교육·학술, 과학·기술, 체육, 관광 분야 : 720-2146

-문화·예술, 언론·출판, 종교, 보건 분야 : 725-3588

○ FAX : 3703-2446

○ 인터넷 : <http://www.unikorea.go.kr>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2001년 9월 인쇄

2001년 9월 발행

발행처 통일부 교류협력국

인쇄처 진명인쇄공사
